

草梁倭館의 造營活動에 관한 研究

정예정*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Choryang-Waegwan

Ye-Jung. Chung*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Korea

요약 : 1678년에 설치된 초량왜관은 조선 역대왜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오랫동안 존치되었으며, 10여 만평의 기지를 배경으로 동관 삼대청과 서관 삼대청 그리고 倭側私造家舍 등이 복합된 양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200여 년의 존치기간 동안 창건공사와 21건의 수리공사가 이행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조정은 조선의 땅에 세워진 왜인 거류지인 왜관의 감독과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 왜관기지 내의 여러 건물을 조선족 조영건물과 일본족 조영건물로 조영주체를 구분하고, 차와 소통할 수 있는 역관을 감동관으로 삼아 양국의 의견을 조정하는 등, 일반적인 관아건축과 다른 인력조직과 공사체제를 편성하였다. 왜관창건공사에는 왜목수와 조선목수가 함께 동원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일 양국이 왜관을 통해 서로의 공사기술과 방법을 체험하고 교류하는 기회였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시대 왜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존치기간이 길었던 草梁倭館을 대상으로 왜관공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豆毛浦倭館의 공사체제를 전례로 하는 창건공사와 공사의 체제정비가 이루어진 수리공사를 나누어 각 공사의 공사내용과, 집행정도, 역가지급, 공사주체를 살펴고, 200년 동안의 추이를 살펴 왜관이라는 독특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공사의 성격을 규명하여, 초량왜관에서 일어난 조일양국의 조영활동에 대한 교류를 건축생산사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고찰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초량왜관, 창건, 수리, 공사내용, 집행정도, 역가지급, 조일양국, 조영활동, 건축생산사, 교류

ABSTRACT : This study concerns especially Choryang-Weagwan which was the largest Japanese House left in Pusan through Chosun Dynasty. Choryang-Weagwan was known to have been jointly constructed by Korean and Japanese carpenters. Therefore, Weagwan was a place for exchange of architectural tradition (special features such as sliding door and straw mat) between Korean and Japan. Judging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certain that mutual influences helped to shape architecture of Choryang-Weagwan.

After establishment Choryang-Weagwan was gradually extended, owing to the prosperity of trade with Japan. But since late 18th century government of Chosun did not give as much care to maintaining Choryang-Weagwan as a result of deteriorating condition of commercial and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From the beginning of Choryang-Weagwan construction, Superintendents of the construction were called Hun-do and Byl-cha, who acted as official interpreters as well. And, during construction works, they were called Gamdong-gwan.

At the start of construction, Weagwan was built partly in Japanese-style by the carpenters from Tokugawa Shogunate. But as time passed, the participation rate of Japanese carpenters diminished gradually. After 1831, Japanese technician vanished extremely and repairing construction was continued by the Korean

KEY WORDS : Choryang-Weagwan, Korean and Japanese carpenters, Gamdong-gwan,

1. 서 론

1-1. 研究의 目的

왜관은 조선조 태종7년(1407)에 설치되어 고종9년(1872) 왜관 접수가 있기까지 富山浦, 齊浦, 鹽浦 등 우리 나라의 浦所를 중심으로 존치되어 왔으며, 치폐를 거듭하는 가운데에도 조선

시대 전 기간동안 조. 일 상호 간에 외교와 무역을 이행하는 장소가 되어왔다. 이처럼 오랜 기간동안 왜관이 존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선의 대일정책인 交隣體制¹⁾가 전제되어 있다. 조선의 交隣體制는 대외적으로 조선국왕과 일본장군사이에 '대등교린'의 체제를 보여주는 동시에 회유와 견제를 기본으로 하

1) 孫承喆, 「朝鮮時代 韓日關係史 研究」, 지성의 샘 P.320

는 ‘羈縻定策’을 내포하는 이중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왜관의 설치는 일본으로부터 내항하는 통교자를 기미질서에 편입시키려는 조선의 통제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왜관은 조선에 도항한 왜인들이 무질서하게 그 영역을 확장하여 거주하는 결과를 가져오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1407년에 병마절도사 姜思德의 건의에 따라 富山浦와 乃而浦 두 곳을 왜인의 거류지로 한정시킨 것²⁾에서 비롯된 것으로 견제와 회유의 의미가 함께 포함된 제도인 것이다. 이후 鹽浦에 入港所를 추가하여 三浦倭館이 되었으나, 1419년 대마도정벌, 1510년 삼포왜란, 1544년 사량진 왜변 등의 조·일간 정세변화의 흐름을 타고 치폐를 거듭하게 된다.

1547년에는 富山浦 단일 왜관시대를 맞이하였으나 이 또한 선조25년(1592), 임진왜란의 발발로 폐관의 위기를 가진다. 임란 후 국교재개의 일환으로 강화교섭(선조31년)이 시작되자 선조 34년(1601)에 絶影島에 임시왜관(假倭館)이 설치되고, 선조39년(1606) 9월에는 정식으로 왜관설치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어 豆毛浦倭館이 설치된다. 그러나 豆毛浦倭館은 설치 당시부터 수심이 얕고, 장소가 협소할 뿐 아니라 배를 정박시키기에 부적절한 곳이었다. 이에 대마도에서는 총 8회에 걸쳐 이관요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 1678년부터는 草梁倭館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1678년에 설치된 草梁倭館은 조선 역대 왜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오랫동안 존치되었으며, 10여 만평의 기지를 배경으로 東館 三大廳과 西館 三大廳, 倭側私造家舍로 구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넓은 왜관기지 주변에는 왜관관련 조선공해인 초량공해 등이 설치되고, 여염집도 배치되어 당시 동래부 행정중심으로부터 변방에 위치한 부산연안에 제법 규모있는 마을이 형성되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초량왜관은 특히, 200여 년의 존치 기간 동안 창건공사와 21 건의 수리공사가 이행되었는데, 조정은 조선의 땅에 세워진 ‘倭人 居留地’인 왜관의 감독과 관리에 책임을 맡고 있었으며, 그 결과 왜관기지 내의 여러 건물을 조선측 조영건물과 일본 측의 조영건물로 조영주체를 구분하고, 倭學譯官을 감동관으로 삼아 양국의 의견을 조정하는 등, 일반적인 관아건축과 다른 인력조직과 공사체계를 편성하였다. 또한, 왜측은 일본의 양식을 지키기 위해 많은 수의 목수를 들이려고 하거나 대마도에서 쇼오지(障子·장지)³⁾를 제작하여 반입함으로써 한정된 거류지 안에서 최대한 그들의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꾀하였다. 그리하여 초량왜관은 監董譯官으로 대표되는 조선측 공사조직과 監董差倭로 대표되는 일본측 공사조직이 상치된 쟁쟁의 입장을 조정하면서 조영활동을 전개하는 장소가 되었으며, 조·일 양국의 건축기술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관 창건공사에는 150명의 왜목수 외에 다수의 조선목수와 부역군이, 수리공사 때에는 양국의 조영인력이 함께 동원되었

2) 『太宗實錄』 太宗7年 7月 戊寅

3) 『倭館移建謄錄』 및 『邊例集要』에 표기된 ‘障子’는 한국에서는 ‘장지’로 일본에서는 ‘쇼오지’로 불린다. 기록에 따르면 대마도에서 제작하여 가져왔다고 하므로 이 부재가 쇼오지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측 사료에 기록된 것이므로 조선의 입장에서 장지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다. 이러한 사실은 조·일 양국이 왜관을 통해 서로의 공사기술과 방법, 공사조직의 체제, 공사도구 등을 경험하고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초량왜관은 일반 관영건축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조영활동을 전개하는 곳이었으며, 200년의 긴 세월동안 조·일 교관관계를 배경으로 창건과 수리공사를 거듭 진행하며, 양국의 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공사의 내용이 증가하는 등의 17~18세기를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가적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왜관을 연구할 때에는 어느 한 시기의 건축적 양식을 상정하기에 앞서 각 시기에 따른 건축내용의 변화상과 그 건축이 조영되고 관리되기까지의 전 과정(건축집행, 인력동원, 재원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초량왜관의 창건공사와 수리공사를 고찰하고, 아울러 동시대 같은 장소에 설치된 왜관관련 관아인 초량공해를 고찰하여 조·일 양국의 건축문화 교류의 장이었던 초량왜관 일대에서 전개된 조영활동의 전말을 건축생산적⁴⁾ 측면에 초점을 두어 고찰하고자 한다.

1-2. 研究의 對象 및 展開方式

본 연구는 草梁倭館의 창건공사와 수리 및 증축 공사를 당대의 왜관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한 문헌적 연구이다. 왜관은 현재 유구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건축내용의 고증 및 건축배경의 이해를 위해 문헌연구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왜관과 관련된 1차 사료에는 「倭館移建謄錄」, 「倭館修理謄錄」, 「邊例集要」, 「增正交隣志」, 「通文館志」, 「春官志」 등이 있다. 이상의 사료 가운데 禮曹관찰의 사료이자, 왜관의 창건과 수리에 관한 직접적인 사료가 되는 「倭館移建謄錄」과 「倭館修理謄錄」, 「邊例集要」 館字條, 「春官志」를 중심으로 왜관공사의 내용을 밝히고, 일반적인 대일관계를 기록한 「增正交隣志」, 「通文館志」 등의 사료 가운데 왜관관련 기록을 참고하여 草梁倭館의 기자가 선정되는 1673년부터 왜관점령이 일어나는 1876년 사이에 왜관의 신축 및 수리공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전개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건공사와 수리공사를 거친 초량왜관의 조영역사를 고찰하여 초량왜관의 건축내용과 변화상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4) 서치상은 “건축물을 당시의 사회적 생산물로서 파악하여,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각종 생산부문의 조직을 형성하는 요소들, 즉 공사재원, 공사인력, 집행방식에 대한 성격규명과 변천을 고찰하는 것을 건축생산사적 고찰이라 하였고(徐致祥, 『朝鮮王朝 願堂寺刹의 造營에 관한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工學博士 學位論文, 1990) 김동욱은 “건축이라는 것이 한 시대의 문화산물이며 거기에는 사람의 담겨짐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실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건물의 외형 분석이 곧 건축사 연구의 완성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외형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집을 계획하고 지어냈는가 하는 생산적 측면의 고찰, 더 나아가 그 집을 짓고 거기 살았던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은 어떤 일상을 벌여나갔는가를 밝히는 점이라 하였는데,(『전환기 건축사학의 전망』, 한국건축역사학회 창립 10주년기념 학술발표대회, 한국건축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이러한 건축생산의 의미들은 공통적으로 건축이 성립되기 위한 배경, 계획하고 조영하는 건축의 전과정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공사관리국인 조선의 조영의지를 밝혀낸다. 둘째, 실질적인 행정주체와 공사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왜관공사에 소요된 역가와 물력의 지급 및 조달을 고찰하고, 왜관공사의 중요도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셋째, 공사행정 및 공사활동 전반에 대한 조·일 양국의 건축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감동역관의 집행활동과 공사인력의 조영활동을 통한 양국의 생산활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본다.

넷째, 왜관관련 관아인 초량공해를 대표하는 초량객사의 수리 내용을 분석하여 왜관공사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2. 草梁倭館의 創建

2-1 倭館基址의 選定

草梁倭館의 창건은 기지를 선정하고, 축소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내용이 각각 '基址選定'과 '館基減定'이라는 용어로 사료에 기재되어 있다. 기지선정이란 왜관의 기지로 거론되는 몇 가지 장소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관기감정이란 단순히 기지의 면적을 축소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도록 축소한 기지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지를 선정하는 문제는 豆毛浦倭館시절부터 계속 언급되어져왔는데, 이것이 1640년부터 시작된倭館移建交涉이며 총 8회에 걸쳐 양국 사이에 논의가 계속되었다. 왜관의 기지선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1673년(현종 14년) 差倭平成令이 茶禮席上에서 對馬島主의 移館요구를 전하면서부터이다. 이때 差倭 및 正副官倭들은 熊川을 기지로 삼아 이관하고자 하였지만 東萊府는 統營과 가까운 熊川을 왜관기지로 삼는 것을 부적당하게 여겼다⁵⁾. 임란의 경험으로 인해 국교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조정의 입장에서 일본은 여전히 견제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선의 강경한 대응도 곧 다른 기지를 선정한다면 이건이 가능할 수 있다는 희유책으로 전환하여, 같은 해 4월에 현종은 東萊근처의 非關防地를 요구한다면 허락할 수도 있다는 뜻을 전하게 하였다⁶⁾. 이러한 조선의 대응에 왜측 또한 熊川을 고집하지 않고 그 근처에다 설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청하였고, 협상의 과정을 보고 받은 비변사에서는 洛江以東의 지역에서 선정라고 통보하였다⁷⁾. 같은 해 8월에 일본측은 草梁을 3개의 이건 후보지(大多浦, 牧場, 草梁)가운데 최선의 왜관기지로 여기고⁸⁾, 1675년 7월에는 조선정부의 이관허락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移館回謝差倭를 파견함으로써⁹⁾ 오랫동안 지연된倭館移建 문제는 일단락 지어졌다.

이처럼 1673년(현종 14)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같은 해 9월에 확정된 草梁倭館의 기지선정은倭館移建交涉(1640년부터 시작된)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었다. 이관을 하고자 하는 왜측의 요구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문호가 아닌 변두리에倭館을 설치하여 외교문제를 해결하고,倭人作弊문제 또한,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5) 「邊例集要」 卷11(館宇條) 癸丑 3月

6) 「顯宗改修實錄」 卷26 顯宗 14年 4月 辛丑

7) 「邊例集要」 卷11(館宇條) 癸丑 4月

8) 「邊例集要」 卷11(館宇條) 癸丑 9月

9) 「顯宗改修實錄」 卷27 顯宗 15年 2月 甲寅

조정은 왜관의 기지를 설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기지를 减定하는데 많은 주의를 기울였는데 1675년(숙종 원년)에 差倭平成近이 왜관 배치를 위해 기지를 보려고 하자, 비변사는 이를 허락하면서도 이전에 平成令이 立標한 터를 근거로 廣占하지 말 것을 명령한다¹⁰⁾.

관기감정은 두 번에 걸쳐 완료되었다. 처음에는 왜인들이 立標한 동서 500보, 남북 205보 가운데, 동서방향만 150보 줄이고, 남북방향은 背山臨海의 形止여서 그대로 두게 되었다. 이 때 草梁倭館의 규모는 豆毛浦倭館의 3배에 달하였다고 한다¹¹⁾. 왜관의 기지는 후에 조금 더 줄어들어 관기감정을 완료한 때에는 동서 245보, 남북 205보의 규모¹²⁾가 되었다. 완공된 뒤의 넓이는 그보다 더 증가된 동서 279.5보, 남북 192보에 달했다¹³⁾. 이 면적은 약 11만 평에 달하며 그 후 조정이 당초에 의도한 대로 증감없이 왜관이 접수되던 1872년까지 200년간 존속되었다.

이처럼 왜관의 기지선정과 관기감정의 결정권은 모두 東萊府를 통한 조정에 있었으며 조선의 의지대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2-2. 創建 당시의 草梁倭館

草梁倭館의 창건공사는 1675년에 선창의 석축을 완료하면서부터 시작되어 1678년 4월에 낙성되기까지 약 3년에 걸쳐 진행되었다¹⁴⁾.倭館에는 飛船등의 왕래가 빈번하였으므로 선창을 수축하는 일은倭館創建의 필수요건이었다.

왜관의 外牆(둘레 1273보, 높이 6자)¹⁵⁾을 경계로 그 内部에는 왜관의 주요건물인 西館 三大廳과 東館 三大廳이 들어섰으며, (倭側私造家舍 또한 들어서게 된다.) 外部에는 왜관의 관리 및 왜관관련 행사를 위한 조선의 부속건물이 들어선 것을 알 수 있다. 이 外牆에는 僮越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關防을 두었다. 창건당시에는 伏兵幕을 3곳에 설치하여 관내왜인의 동정을 살피게 하였으며 北門을

두어 茶禮 때 宴享廳을 왕래하도록 하였다¹⁶⁾. '釜山和館竣工圖'(Fig.1)에는 관내시신을 옮기던 不淨門(水門)도 기록되어 있다.

창건당시에 지어진 건물에는 조선이 조영한 왜관주요건물(東館 三大廳과 西館 三大廳)과 일본이 조영한倭側私造家舍¹⁷⁾, 그리고 조선이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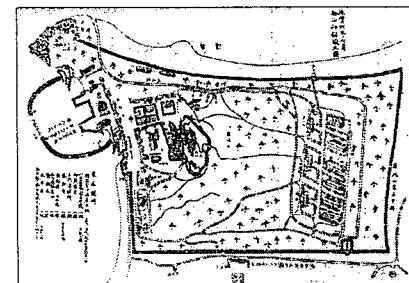


Fig. 1 釜山和館竣工圖

(출전: 高橋章之助, 「宗家と朝鮮」)

10) 「邊例集要」 卷11(館宇條) 乙卯 3月

11) 「邊例集要」 卷11(館宇條) 乙卯 4月

12) 「倭館移建臘錄」 丙辰 正月 19日, 「邊例集要」 卷11(館宇條) 丙辰 正月

13) 완공 후의 면적에 대해서는 사료마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지만 본고에서는 한국사료를 근거로 하여 8자를 1보로 계산한 것을 따른 것이다.

14) 「邊例集要」 卷11(館宇條) 乙卯, 「倭館移建臘錄」 乙卯 閏5月 16日

15) 「通文館志」 와 「增正交隣志」에는 6자를 1보로 계산하여 1,273보로 「邊例集要」에는 8자를 1칸으로 계산하여 796칸으로 기록되어 있다.

16) 「邊例集要」 卷11(館宇條) 戊午 閏 3月

영한 부속 건물인 奪門(公須間을 포함)이 있었다. 關防으로는 조선이 조영한 守門과 北門이 있으며, 伏兵幕 3處 또한 수

관 소장, <Fig.2>)를 비교해 보면²⁴⁾ ‘釜山和館竣工圖’의 묘사 내용을 최대 영조년대로 상정한다 할지라도 영조년대 조차 倭

Table 1. 창건당시의 조영규모

(출전: 「邊例集要」, 권11 館宇條, 戊午, 윤 3월)

구분	건물명	조영규모
東館	館守家	館守家(길이 10칸 4자, 너비 4칸 5척), 中門(3칸), 半間二柱門(1庫), 曲牆(75칸)
	開市大廳	開市大廳(길이 12칸 3자, 너비 3칸 2자, 합 39칸)
	裁判家	裁判家(길이 9칸 7자, 너비 3칸 2자, 합 31칸), 中門(1칸), 半間二柱門(1庫), 曲牆(68칸)
西館	東大廳	大廳(길이 5칸 3자 5치, 너비 3칸 5자 5치), 東軒(길이 8칸 2자 5치, 너비 4칸 2자), 西軒(길이 6칸 6자 5치, 너비 4칸 2자), 東行廊(길이 17칸 5자, 너비 3칸 1자 5치), 西行廊(길이 17칸 5자, 너비 3칸 1자 5치), 半間二柱門(15庫), 曲牆(216칸 6자)
	中大廳	大廳, 東西軒, 東西行廊, 曲牆(間數는 동관과 같음.)
	西大廳	大廳, 東西軒, 東西行廊, 曲牆(間數는 동관과 같음.)
기타	宴享廳	大廳(32칸), 公須間, 酒房, 沙器庫(合 28칸), 大門(3칸), 中門(1칸 반), 半間二柱門(1庫), 墻(41칸 3자)
	關防	守門(5칸), 北門(1칸), 伏兵幕 3곳(合 6칸), 外牆(796칸)
總合	朝日造營家舍	796칸 반, 牆垣 안팎 1632칸 5자

보시 각 진에서 나누어 맡은 것으로 조선이 조영한 것이다¹⁸⁾. 外牆은 왜인이 스스로 지었다¹⁹⁾. 西館의 中大廳 가운데 일부를 왜인이 덧 지은 것과 수장품인 쇼오지(장지)를 대마도에서 제작한 것을 제외하면 왜관 주요 건물은 조선이 조영한 것이다²⁰⁾. 왜관창건 당시 사료에 기록된 건물의 규모는 <Table. 1>과 같다. 이는 조선이 조영한 건물만 기록한 것이며, 倭側私造家舍는 일본이 조영한 건물이므로 신관의 공사를 마친 후에 조선측 조영건물과 함께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1677년(丁巳) 12월의 기록²¹⁾에서倭人们이 사사로이 지은 家舍에 들어갈 재목이 부족하여 私家の 재목으로 入給하라고 회답한 기록을 통해倭側私造家舍 또한 이 시기에 지어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倭館移建贍錄」에 따르면 1678년 4월 14일에 舊代官倭 5명, 從倭 25명, 都禁徒倭 3명이 먼저 신관에 입주하고, 그 보다 뒤에 館守倭 이하大小倭 454명이 신관에 입주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都禁徒倭家와 舊代官家가 代官家와 함께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延寶 6년 7월(草梁倭館이 낙성되던 1678년의 일본연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²²⁾ ‘釜山和館竣工圖’(<Fig. 1>)과 왜관의 규모가 제대로 갖추어진 정조년대(1783년)의 왜관을 묘사한 卜璞의 ‘倭館圖’²³⁾(현 국립전주박물

側私造家舍²⁵⁾는 代官家 중심으로 구성되어 1783년의 왜관을 묘사한 ‘倭館圖’에서 볼 수 있는 造泡家, 篓席家, 多多味家²⁶⁾, 染家, 餅家, 糖家 등은 창건당시 조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창건당시의 초량왜관은 卜璞의 ‘倭館圖’나 「增正交隣志」를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진倭館建物에 비해 주요건물만 조영되었으리라 사료된다.

草梁倭館은 龍頭山을 가운데 두고 東館과 西館으로 구성되었다. 東館에는 왜관을 총괄하는 館守의 숙사 겸 집무소인 館守倭家가 있고, 그 옆에 양국의 상인들이 무역을 하는 장소인 開市大廳과 裁判官(외교교섭관)의 숙사인 裁判倭家가 있었는데, 西館에는 대마도에서 파견된 사절이 체제하는 숙소 3동(西館三大廳)이 나란히 있어서 왜관본래의 기능인 客館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西館 가운데 東大廳은 第 1船正官이, 中大廳은 參判使²⁷⁾가, 西大廳은 副特正官이 머무는 곳이었다²⁸⁾.

된 때(왜관 존속기간 동안의 대감동은 총 5차례이다.)이므로 이 그림에는 가장 변형하고 짜임새를 갖춘 시기의 왜관이 묘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4) 왜관을 묘사한 그림에는 釜山和館竣工圖(『宗家と朝鮮』), 卜璞의 倭館圖(국립전주박물관 소장), 草梁倭館 古繪圖(國史編纂委員會), 宗家文庫 소장의 草梁倭館圖, 個人藏인 草梁倭館圖屏風의에도 다수가 있으나 비교적 배치상황과 전체적인 경계가 뚜렷하고 정확한 연대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형성기와 완성기의 왜관을 묘사하여 왜관의 내용변화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釜山和館竣工圖”와 卜璞의 ‘倭館圖’를 비교하여 왜관 건축내용의 변화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25) 이 그림에서 왜족사조가사는 대마도에서 파견되어 외교문서를 조사하는 승려를 위한 東向寺, 무역을 관리하는 직제인 代官의 집, 豪房, 什物庫 등이 그려져 있다.

26)倭側私造家舍 중에 다다미를 제작하던 집을 일컫는 명칭이다.

27) 大差倭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參判에게 오는 差倭를 말한다. 洪性德, 「十七世紀 別差倭의 渡來와 朝日關係」, 『全北史學』 제15집, 1992, pp.116~112

28) 釜山府史原稿,倭館篇, 民族文化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절로서의 역할을 마치면 곧바로 귀국하기 때문에 동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체재 기간이 짧았다.

동관과 서관에 대한 건물명은 각 사료마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특히 「邊例集要」館宇條에 기록된 왜관 건물명은 일반적으로 왜관을 일컫는 건물명과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에 기록된 東館, 西館, 中館은 다른 사료²⁹⁾에서 일컫는 西館三大廳의 東大廳, 西大廳, 中大廳이며, 館守家, 橋成陳家, 開市廳은 일반적으로 東館三大廳으로 불리는 館守家, 裁判家, 開市大廳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물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通文館志」에 ‘西有三館以處其送使及差倭其曰東館...其曰中館....其曰西館’이라고 하여 「邊例集要」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같은 東館, 中館, 西館이 西館三大廳임을 알 수 있게 한다.



Fig. 2 倭館圖

(출전: 열화당편집실, 「韓日交流二千年」, 悅話堂, 1984소장; 국립진주박물관)

2-3. 役價와 物力의 調達

왜관은 조선이 관리하는 건물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倭役價는 조선에서 결정하여 조달하였고, 자연히 왜목수와 왜역부의 名數를 조정하는 권한도 조선이 가지고 있었다. 비록 왜측의 요구대로 150명의 왜목수를 허락하였지만 이 또한 인원을 늘리고 공기를 단축하여 공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조선의 의지가 포함된 것이었다.

조선은 초기 예산보다 증원된 150명의 역가를 합리적으로 지급 할 방법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70명의 왜목수에게는 紬米饌價를 합친 쌀을 6되씩 지급하였고, 하루에 쌀 2되 외에 다른 饌價의 지급이 없던 80명의 소목수에게는 饌價米 2되를 더 지급하였다³⁰⁾. 12월에는 大木手에게 1646년의 전례(豆毛浦倭館시대의 전례)를 따라 매일 手功銀을 1전 5푼씩 지급하였고, 小木手에게 매일 2되씩 饌價米 100섬을 마련해 주었다³¹⁾. 이상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역가지급의 규칙은 1678년(戊午) 3월에 발표된다.

왜목수 150명 가운데 대목수 70명은 매일 각자 요미(料米) 3되, 찬가미(饌價米) 2되씩을 셈하여 지급하는 일. 手功銀(呑欲) 1전 5푼씩을 셈하여 지급함이 정당하다고 하였고, 소목수 80명은 매일 각자에게 요미(料米) 3되, 찬가미(饌價米) 2되씩을 셈하여 주는 일. 도합 4,776섬 이온바, 그 중 혹시, 선후(先後)에

나온자, 또한 군역에 이바지한 일이 있으나 병에 걸리는 일로 인해 공사하지 않은 날이 있어 이는 원래 숫자(공사일수)에서 수를 덜어낸이 마땅한 것 같은 일.³²⁾

또한, 같은 해 윤 3월 신관의 공사를 마친 후 지급한 역가의 기록³³⁾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조정이 大木手(匠人)와 小木手(役夫)를 구분하여 일한 대가 만큼 역가를 지급한 사실과 목수 가운데 全日不役, 半日不役, 朝前不役한 목수를 각각 나누어 원래의 역가 가운데서 計減한 사실을 알 수 있다.

『增正交隣志』에 의하면 이렇게 지급된 역가의 총합이 쌀 9,000여 섬과 은 6,000냥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는 1678년 윤 3월에 「邊例集要」에 기록된 쌀의 수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나 동 사료의 같은 해 7월에 船倉工事を 완전히 마친 후 小木手들의 역가에 쌀 58섬 10말을 더 하였다³⁴⁾하니 이를 각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환산하면 9,000여 섬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양의 手功價銀과 料米의 조달이 한 판아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목수의 手功價銀의 경우 6,223냥 5푼 가운데 1,000냥은 東萊府의 稅銀에서 비롯된 것³⁵⁾이었고, 나머지 5,000냥은 역관들이 왜관의 被執物貨중에서 획득한 것이었다³⁶⁾. 料米의 경우는 상기한 대로 경상도 稅米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常平廳이나 賑恤廳에서 支給하도록 하였다³⁷⁾. 또한 왜학역관들은 신축당시 왜목수의 工錢으로 지급할 비용이 부족해지자 영남 民結 5000냥을 빌려 이것으로 고리대를 하여 工錢을 마련하였다³⁸⁾. 왜관창건 공사 때 조선목수와 役夫의 급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1675년에 船倉을 새로 짓는데, 僧軍 400명이 19일 중 赴役하고 各浦防軍 100여 명이 17일 중 始役하였다³⁹⁾고 한다. 선창공사는 館基減定의 문제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8월 20일에 畢役하였으며, 이 공사는 하루 부역하는데 僧軍 1,000명과 防軍 800명의 노역이 필요했다고 하니⁴⁰⁾ 쉬운 공사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新館開基때 부역인원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1676년 7월의 기록에 따르면 부역군이 31,287명이나 되며, 木手, 助役, 炊飯僧人을 모두 합한 수가 2,213명이었다고 한다⁴¹⁾. 이는 倭館工事의 규모로 보아 연인원으로 생각되어지는 숫자이다. 1678년 윤 3월의 기록에 따르면 신관공사를 마친 후 각포 역군을 放送하였는데, 우리나라 목수 20명을 客舍移建工事에 차출한 후, 그 나머지만 放送하였다고 한다⁴²⁾. 신관공사에 동원된 우리나라

32)倭木手一百五十名內 大木手七十名 每名毎日料米三升 饌價米二升式計給事 手功銀一錢五分式 計給停當爲白遣 小木手八十名 每名毎日料米三升 饌價米二升式計給事都合四千七百七十六石是白乎所 其中或有先後出來者亦有立役 而有因病故不役之日 此則似當有減省於元數之事. 「邊例集要」卷11(館宇條) 戊午 3月

33)「邊例集要」卷11(館宇條) 戊午 閏3月

34)「邊例集要」卷11(館宇條) 戊午年 7月

35)「邊例集要」卷11(館宇條) 戊午 正月

36)「邊例集要」卷11(館宇條) 戊午 7月

37)「邊例集要」卷11(館宇條) 戊午 3月

38)「備邊司賸錄」肅宗 4年 8月 15日

39)「邊例集要」卷11(館宇條) 乙卯 5月

40)「倭館移建賸錄」乙卯 閏 5月16日, 「邊例集要」卷11(館宇條) 乙卯 6月

41)「邊例集要」卷11(館宇條) 丙辰 7月

42)「邊例集要」卷11(館宇條) 戊午 閏 3月

29)『增正交隣志』券3(館宇條)

30)『邊例集要』卷11(館宇條) 丁巳 9月

31)『邊例集要』卷11(館宇條) 丁巳 12月

목수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일부가 객사공사에 동원된 사실을 통해, 그들이 東萊府 관영공사에 종사하던 工匠의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왜관창건공사에 동원된 조선공장의役價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앞서 밝힌 대로 이들이 관영공사에 종사한 공장임을 고려할 때 같은 시기에 공사를 마친 南別殿 중건공사의 기록과 비교하여 왜목수에게 지급된 역가의 정도를 살펴 볼 수 있다. 「南別殿重建廳儀軌」에는,

장인(匠人)은 베 2필 쌀 9말, 육조역(肉助役)은 베 1필 쌀 6말, 모조역(募助役) 및 모군(募軍), 인거군(引鋸軍), 화정(火丁), 복직(卜直)들은 각 포 2필 쌀 9밀⁴³⁾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1677년 왜관창건 때에 왜목수 가운데 大木手 70명 각자에게 매일 6되씩, 小木手 80명 각자에게 매일 4되씩 지급된 역가(한 달로 계산하면, 대목수는 18말, 소목수는 12말)와 비교하면, 조정이 조선목수에게 지급하는 料米보다 훨씬 많은 양의 요미를 왜목수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게다가 1677년 12월에는 왜목수 중에 대목수 각자에게 手功銀 1전 5푼을 매일 지급하기도 하는 후한 대접을 해주었다. 특히 조정은 왜목수를 대목수와 소목수로 구분하여 대목수에게 조금 더 높은 역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장인의 급료보다 모군의 급료가 더 높은 조선의 공사관례⁴⁴⁾와는 다른 규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시 이 공사가 동래부에서 꽤 비중있는 공사였다는 사실과 우수한 日本匠人이 동원된 공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창건공사 당시役價支給은 조정에서 주관하였으며 手功價銀의 대부분은 왜관 가운데 被執物貨로써 조달하였고 나머지는 本府(東萊府)의 稅銀으로 충당하였다. 料米의 대부분은 慶尙道 稅米로써 조달하였고 일부는 다른 관아의 儲置米를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역가조달처는 倭館中, 慶尙道, 東萊府, 賑恤廳과 常平廳등의 여러 官衙였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급된 倭木手의役價는 당시 조선목수에게 지급되던 역가에 비해 높은 것이었다.

물力 또한 모두 조정에서 지급하였으며, 지급이 어려운 물력인 경우에는 積을 치르거나 구하기 쉬운 물력으로써 대신 지급해주었다. 처음에 監董倭는 일본양식을 이루기 위해 신관의 수장품인 장지를 대마도 가운데에서 만들어 올 것이므로 들어갈 재목을 셈하여 조선에서 재목으로 갚을 것, 초석은 絶影島에서 취용할 것, 왜인의 사조가사에 덮을 地瓦는 대마도에서 구워서 옮기면 폐단이 있으니, 金海에서 왜인이 지불하여 얄도록 할 것 등의 세 가지를 제안하였고, 조정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다. 특히 金海의 기와굽는 곳에서 왜인들이 기와를 사도록 하는 것은 원래 금지하는 것이었다⁴⁵⁾. 이는 같은 시기에 조영된 왜관관련 公廡에 舊材가 이용된 사실과 대조된다. 이처럼 조정이 조선公廡의 所入物力を 절약하면서, 왜관의 물력을 지

43) 匠人 布二匹 米九斗 肉助役 布一匹 米六斗 募助役及募軍 引鋸軍 火丁 卜直等 各布二匹 米九斗 「南別殿重建廳儀軌」 丁巳 7月12日

44) 모군파는 달리 전문기술자인 장인은 관이 강제로 부역으로 동원하였기 때문에 장인의 급료가 모군보다 오히려 낮았던 것이다. 金東旭, 「韓國建築工匠史研究」, 技文堂, 1993, pp.166~173

45) 「邊例集要」卷11 (館宇條) 丙辰 7月

급하려는 노력은 평화적 외교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의 내용 외에 屯田割給의 문제 또한 제시되었다. 草梁倭館의創建工事を 마치고 朝廷은倭館주위에 間閣을 두기 위해 일종의 특혜를 제시하고 있었다.倭館移建후에 間閣이 移接하도록屯田을 허락하고 정확히 측량한 후 세금을 줄여 많은 수의 民居가 생겨나도록 한 것이다⁴⁶⁾. 뿐만 아니라 新館을 만들면서 그 속에 太僕屯田이 포함되자 太僕侍에 舊館의 땅을 주어 갚는 등倭館과 관련된 土地의 정리를 아울러 행하였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창건당시 목수의 관리, 물력 및 역가지급, 왜관주변 행정 정비는 모두 조선의 규율에 따라 이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4. 訓導, 別差의 監董活動.

왜관공사는 왜관 소유권을 가진 조정의 주체로 집행되어졌다. 조정은 일정한 영조절차를 통해서 왜측의 요구를 보고 받았으며, 같은 절차를 통해 差倭에게 허락여부를 전령하였다. 이러한 영조절차는 일반적인 왜관의 행정 절차와 같은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왜관의 행정은 差倭를 직접 대면하는倭學譯官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그들은 조정의 명령과 왜측의 요구사이에서 혼란을 타결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倭館移建隸錄」에 나타난 창건공사 당시의 문서유통을 살펴보면 공사집행절차와 訓導, 別差의 활동을 알 수 있는데, 訓·別의 手本이 釜山鎮僉使를 거친 후 東萊府使의 장계를 통해 慶尙監司에게 보고되어 조정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急報인 경우에 東萊府使는 慶尙監司를 거치지 않고 비변사에 馳啓할 수 있었다. 왜인이 요구하는 신창공사는 東萊府를 거쳐 조정의 윤허를 얻어야만 시행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訓·別의 활발한 활동이 왜관조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즉, 조정의 권한을 받은 동래부가 공사의 집행을 맡았으나 직접 일본측과 의사소통이 가능한倭學訓導와 別差의 활동이 실질적인 공사집행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물론 訓導와 別差가 왜관공사의 기술자는 아니었지만 감동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공사에 대하여 문외한은 아니었다. 대부분 조선시대의 역관은 세습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어린시절부터倭學生徒로 왜관에 파견되어 오랫동안 실무를 익혀야만 오를 수 있는 직위였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이들이야 말로 왜관행정 전반을 잘 아는 전문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왜관창건당시 공사를 감독한 사람은 金謹行, 朴再興, 洪禹載, 朴有年 등이었다⁴⁷⁾. 김근행은 首譯, 朴再興은 訓導였으며, 이들은 모두 역관 출신이었다. 이처럼 많은 조선의 역관이 왜관감동에 투입되었는데 이는 왜관창건 당시 역관들의 활발한 감동활동을 보여주는 일례가 된다.

이처럼 왜관창건공사의 집행자를 訓導와 別差라고 한다면 공사주체는 工匠과 役夫였다. 창건당시 왜관공사에는 대목수(匠

46) 「邊例集要」卷11 (館宇條) 戊午 5月

47) 「通文館志」卷5, 「增正交隸志」卷3 (館宇條)

人70명)와 소목수(役夫80명)로 구성된 왜목수 150명이 투입되었다. 실제로 왜인들은 일본양식을 고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일례가 쇼오지(장지)의 문제였다. 그들은 조선의 입장에서 수장에 불과한 장지를 대마도에서 따로 제작하여 가져왔으며⁴⁸⁾. 또한 창건 초기부터 일본집이 조선집과 다르다는 이유로 왜목수 150명을 파견할 것을 요청하였다. 館守家를 수리할 때에도 계속 왜목수가 활동한 사실을 상기해 보면 이 건물은 倭工匠이 중심이 되어 조영된 건물로 보인다. 물론 이 공사에는 많은 조선의 공사인력이 함께 투입되었다. 왜관공사가 다 끝난 후 조선의 목수를 풀어주고, 그 중 20명을 선출하여 客舍를 이건 하는 곳에 보내었다⁴⁹⁾는 기록은 왜관공사에 동래부 관아를 조영하는 조선목수가 투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 객사건축은 일정한 규범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조선의 고급기술인력이 왜관조영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를 목수 외에도 조선의 공사인력에는 僧軍과 各浦 防軍이 있었다⁵⁰⁾. 1675년에 왜목수의 수를 결정하는 문제가 생기자 조정은 왜관공사에 조선의 목수가 함께 도와 일하도록 제안한다⁵¹⁾. 물론 이 제안은 왜측의 끈질긴 요구로 반영되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나 선창공사를 할 때 監董差倭가 조선역부와 倭役夫가 한 곳에 섞여 일하는 폐단을 막고자 하는데 이 대목은 분명 왜인과 조선인이 동시에 왜관공사를 수행하였던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⁵²⁾. 실제로 假家와 船倉을 지을 때 各浦防軍 100명과 僧軍 400명이 동원되었고⁵³⁾, 1677년(숙종 3년)에 경상도 관찰사 金德遠이 왜관을 새로 짓는 일에는 갖가지 역군이 50여만 명이나 된다고 하며, 호남 각 고을 중에 영남과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의 승군을 갈라주어 부역하게 하자는 장계를 올리자, 備局이 각 鎮浦의 船防軍을 매달 2백 명씩 차출하여 赴役하도록 하였다⁵⁴⁾. 또한 開基공사때 동원된 부역군 31,287명과 木手, 助役, 煙飯僧人을 모두 합한 2,230명의 조선측 인원이 동원되었다고 한다⁵⁵⁾. 이상의 기록을 통해 많은 수의 조선인력이 왜관공사에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은 일본양식을 이루는 문제에 대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한도에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⁵⁶⁾. 다만 모든 왜관조영의 일은 조선이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양식의 문제 또한 조선의 감독 하에 타결되었다. 일본은 서관 중대청 좌우행랑의 장지와 倭側私造家舍등을 담당하였는데 실제 조영하는데 있어 왜목수와 조선목수의 활동범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倭人作弊臘錄」을 보면 紛伊라는 여자가 왜관에 잠입하여 二代官

48) 「邊例集要」卷11(館宇條)丙辰 7月

49) 「邊例集要」卷11(館宇條)戊午 閏 3月

50) 여기에는 경상도 각읍의 승군과 전라도 일부지역의 승군이 포함되고 있었다. 「肅宗實錄」卷6 肅宗 3年 2月 己未

51).....工匠之役不必專責於倭我國木手亦當從多助役諫此事.....「倭館移建臘錄」乙卯 4月 17日

52) 「倭館移建臘錄」乙卯 閏 5月 初5日

53) 「邊例集要」卷11(館宇條)乙卯 5月, 「倭館移建臘錄」乙卯 閏 5月 16日

54) 경상도 각읍의 승군과 전라도 일부지역의 승군, 그리고 경상도 각 진포의 수군도 여기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肅宗實錄」卷6 肅宗 3年 2月 己未

55) 이 인원수는 연인원으로 사료된다. 「邊例集要」卷11(館宇條)丙辰 7月

56) 조정은 장지의 제작을 대마도에서 하도록 허락하고 목재로써 대가를 치른다. 「邊例集要」卷11(館宇條)丙辰 7月

倭의 누각 밑에 굴을 파서 숨어 지냈다고 하는 기록⁵⁷⁾이 있으니 이를 통해倭側私造家舍인 代官家는 왜인이 조성하였으며, 누각의 형태를 한 일본양식의 건축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館守家의 경우 수리할 때에도 계속 왜목수가 활동한 사실을 상기해보면 이 건물은倭工匠이 중심이 되어 조영된 건물로 보인다. 앞(2-3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수한 일본장인이 왜관공사에 투입되었다면 조정은 왜관공사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왜인이 일본양식을 이루는데 협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이 공사비를 지급하고 공사를 집행하였기 때문에 일본 건축양식의 결정권은 조선이 가지고 있었고, 조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일본양식의 건축이 가능할 수 있었다.

3. 増築과 修理工事

3-1. 大監董과 小監董

조정은 왜관수리에 대한 일정한 규칙을 정했다. 왜관은 바닷가에 있어 쉽게 무너지므로 25년 사이에 東·西館을 모두 수리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大監董이라 하고, 화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 퇴락한 경우 수리하는 것을 小監董이라고 하였다⁵⁸⁾.

草梁倭館의 수리공사는 1684년부터 1864년까지 大監董과 小監董을 합하여 모두 21건이 시행되었다. 이 외에도 6회에 걸쳐 西館과 東館의 수리가 행해졌다. 그 가운데 大監董이 5회, 小監董이 16회에 달하였는데, 大監董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1696년, 1721년, 1745년, 1772년, 1801년으로 수리요청기간이 각각 25년, 24년, 27년, 29년으로 나타난다⁵⁹⁾.

각 수리는 조정이 책임을 맡아 시행하였으며 大監董의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왜측의 수리요구로부터 조정이 허가를 내리는 기간을 살펴보면 처음 시행된 감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리요청을 받은 그 해에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大監董이 있을 때 年例送使를 중지하여 조정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며⁶⁰⁾, 조정은 또한 처음 시행된 大監董을 전례로 삼아 그 후의 大監董에도 연례송사의 중지를 일본에 요청하였다⁶¹⁾. 조정은 다섯 건의 大監董 가운데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年例送使의 중지를 언급하였으며, 이는 전례가 되었다⁶²⁾.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大監董의 경우에는 양국 모두 약정한 사안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였고 외교적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고자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大監董은 1801년 大監董 이후로 시행되지 않게 된다. 1802년에서 1804년에 걸친 東·西倭館수리를 하고 나서 1809년부터 조정은 大監董의 연한을 40년으로 할 것을 일본측에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그리하여 1813년부터 1864년까지 약

57) 孫承喆, 「倭人作弊臘錄을 통하여 본倭館」『港都釜山』 제10호, 1993년

58) 「增正交隣志」 卷3 (監董條)

59) 張舜順은 大監董을 5회로 설정한 근거로 25년마다 왜관 전부를 대수선했다는 「增正交隣志」의 기록과 수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들고 있다. 張舜順, 「朝鮮後期 草梁倭館의 修理實態」, 제46회 한일관계학회 월례발표회 1998년 6월 13일

60) 「增正交隣志」 卷1 (年例送使停止條)

61) 「邊例集要」 卷11(館宇條)壬寅 12月

62) 「邊例集要」 卷11(館宇條)癸巳 4月

50여 년 동안 8차례에 걸쳐 왜관수리가 시행되었다. 이렇듯 1813년 이후의 大監董은 왜관 전체를 수리하지 않고 몇몇 건물을 돌아가며 수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수리방식의 변화는 당시 조·일 외교 관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19세기가 되면서 상반된 대외의식과 易地通信⁶³⁾에 의해 교린체제가 변질되어가고 이에 따라 왜관에서 이루어지는 조·일 무역도 쇠퇴하였다. 또한 전국에 걸쳐서 기근이 발생하고 있어서 백성들의 생활이 많은 곤란을 당하고 있던 처지였다. 따라서 조정이 무리하게 왜관수리를 단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小監董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는데 일정한 햇수가 지나 수리하는 경우와 화재로 인해 수리하는 경우가 있었다. 조정은 소감동 또한 대감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왜관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조금 달랐다. 1701년에 작성된 倭館看儉節目⁶⁴⁾에 따르면 왜인의 偷毀處는 조정이 물력을 지급함에 부당하다고 거론하고 있다. 조정의 이러한 견해는 수리를 임하는 태도에도 잘 드러나게 되는데 실화로 발생된 수리요구가 있는 해로부터 평균 4, 5년이 흐른 후에야 허가를 내려주는 사실은 상기한 조정의 입장을 잘 대변해준다. 뿐만 아니라 「春官志」에는 관 수리에 대해서 大監董과 小監董을 함께 수록하고, 따로 '附失火改造'라는 항목을 두어 실화로 인한 수리를 별도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조정이 실화된 館宇를 일반적인 監董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정은 館宇수리의 책임을 맡고 있었으나 그 책임이 모든 館宇에 다 적용하지 않고, 왜관 창건 때 조정이 조영한 건물만 한정함으로써 왜관수리의 책임한도를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3-2. 修理工事와 倭館의 變化

오랜 기간동안 여러 차례 감동을 거친 왜관은 창건당시의 모습에서 많이 변형되어졌다. 왜관수리공사는 크게 규모를 그대로 지키는 수리와 增築이 포함된 중수가 있었는데, 왜관관련史料에는 修理, 改建, 重修 등의 용어가 적확한 개념 없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가 쓰인 상황을 잘 분석해 보면 크게 修理와 重修의 개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修理'라는 용어는 왜관 창건당시와 같은 규모를 지키며 더 이상의 확장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⁶⁵⁾가 강할 때 사용되었다. 改建또한 修理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에 반해 '重修'라는 용어는 건물의 규모가 증축됨을 의미하거나役事が 큰 경우⁶⁶⁾를 의미

63) 원래 信使行은 에도를 방문하고 도쿠가와 장군을 직접 만나서 국서를 교환하였으나 신미통신사는 그 장소를 에도가 아닌 쓰시마로 바꾸었는데 이를 '易地通信'이라 일컫는다. 孫承誥,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 자성의 셨, 1994, p.265

64) 辛巳年 12節目 가운데 5항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倭人偷毀處 則決不當自我給價 故修理所入木物成冊中退材有無 既已區別是白置無退材處段 不當論價之意 今方嚴飭 而必如是而後 庶防日後偷毀之弊是白齊' 「邊例集要」卷11 (館宇條) 辛巳 7月

65) 이러한 경우는 화재로 인한 건물을 복구하는 경우(1960년 관수와가 화재, 1715년 서관동대청 서행랑 화재등이 이러한 경우이다.)와 원래의 규모를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의 수리를 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66) 1728년에 공사를 마친 東館 三大廳 重修에서는 犯傷한 곳이 많아 조정

한다. 그러나 사료에서는 또 다시 이 양자를 뮤은 하나의 상위 개념으로서 修理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므로 본고에서도 수리연혁 가운데에서 修理와 重修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수리초기에는 대규모의 間架增築은 없었고, 초창 당시의 건물 규모를 유지하려고 했다. 1690년에 공사를 마친 館守倭家의 수리가 대표적인 예로 수리 전 間架의 규모를 그대로 지켰다⁶⁷⁾. 1715년에 공사를 마친 西館 東大廳 西行廊의 수리 또한 약 1칸 정도가 증축된 것으로 거의 수리 전의 間架를 지킨 것이다⁶⁸⁾.

그러나, 1724년을 기점으로 왜관은 적지 않은 규모로 증축되기 시작한다. 西館 三大廳 五行廊의 중수 당시 間架의 수는 941칸으로 기록되는데⁶⁹⁾, 왜관창건 때의 기록에서는 曲牆을 제외한 三大廳 六行廊의 건물규모는 약 594칸이었다. 그러므로 수리공사에 담장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볼 때, 6행랑 가운데 하나의 행랑을 제외한 三大廳 五行廊을 증수한 후의 間架가 941칸에 이른다고 하니, 많은 수의 間架增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이후 1787년 西館 東大廳 西行廊을 85칸으로 증수하였다는 기록⁷⁰⁾이 있어 더욱 명확해지는데, 1715년에 수리공사를 마칠 때 西行廊의 칸수가 56칸이었음을 상기하면 행랑 1동이 29칸이나 증축된 것이다.

이처럼 왜관의 주요건물은 모두 증축되었다. 이는 17~18세기에 조·일간의 활발한 무역활동이 전개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조선에 올 다수의倭使들을 위한 거주처의 필요로 인한 것이다. 그리하여 조정은倭使들이 머무는 西館부터 서둘러 증축하고 뒤이어 東館을 증축하였다. 1749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751년에 공사를 마친 東·西館 三大廳 五行廊의 중수 때는 東館은 館守家 73칸과 館守家에 부속된 大門 18칸, 中門 2칸을 합한 93칸, 裁判家 48칸과 그에 부속된 大門 2칸, 中門 1칸을 합한 51칸, 그리고 開市大廳 60칸이 증축되었고⁷¹⁾, 西館은 이전에 한번 증축한 間數인 941칸을 그대로 지켜 증수하였다. 1797년에는 西館의 東大廳 東行廊이 85칸으로 증축되었다⁷²⁾. 이는 1751년에 증수된 三大廳 五行廊에서 제외된 행랑이 뒤에 증축된 것으로 판단된다⁷³⁾. 그 이후(순조 25년 이후)의 증축 여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현존하는 사료가 없으나 18세기 이후 조·일간의 무역활동이 쇠퇴한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면 큰 증축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뿐 아니라 각 鎮浦에서 修補를 맡아야 할 정도였다. 「倭館修理曆錄 乙巳 9月 10日」

67) 「倭館移建曆錄」庚辰 6月 6日

68)倭館創建 당시 東大廳 西行廊의 규모는 長 17間 5尺 廣 3間 1尺 5寸으로 약 55간 1尺가량이 되는데, 을미년 기록에 따르면 長 141尺 廣 25尺 1寸으로 약 56간 11尺의 규모라 한다. 東大廳 東行廊을 燃燼하여 보고한 기록에 따르면 東行廊 또한 56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邊例集要」卷11 (館宇條)

69) 「邊例集要」卷11 (館宇條) 甲辰 12月, 「倭館移建曆錄」에는 941칸으로 기록하고 있다.

70) 「邊例集要」卷11 (館宇條) 丁未 3月

71) 「邊例集要」卷11 (館宇條) 庚午年 12月

72) 「邊例集要」卷11 (館宇條) 丁巳 6月

73) 中大廳은 西大廳과 東大廳이 85칸인 것과 달리 80칸이었음을 알 수 있다. 「邊例集要」館宇條에 따르면, 1822년에 중대청을 燃燼한 사실을 보고하는 기록 가운데, 그 간수가 80칸임을 말하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倭側私造家舍이므로 조선측 사료에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釜山和館竣工圖’와 ‘倭館圖’를 비교해보면 대官家の 규모도 증축된 것으로 판단된다⁷⁴⁾. ‘釜山和館竣工圖’에서는 일렬로 배치된 대官家の ‘倭館圖’에서는 ‘ㄱ’자 형태의 칸수가 증가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을 토대로倭館을 중수할 때에는 그 필요에 따라 間架를 증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거듭되어 진 중수와 수리는 모두 조정의 담당이었기에 왜관의 수리는 조선이 왜목수에게 역가를 지불하고, 물력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⁷⁵⁾. 왜목수를 들이는 이유는 일본양식을 이루기 위해서였다⁷⁶⁾.

1751년에 이루어진 西館 三大廳 五行廊 重修기록에는 왜목수가 家舍를 제작토록 하는 이유는 館宇의 제작이 조선과 다른 데 있다고 하였다⁷⁷⁾. 또한 1791년 開市大廳을 개건할 때에도 왜인의 집짓는 제도가 기이하고 정밀하며, 대청은 대들보 위에 장식이 중첩되어倭工이 아니면 모양을 이를 수 없으므로 전부터 왜인공장에게 대가를 지불하여 사역하였다고 한다⁷⁸⁾. 그러나 이러한 사료를 근거로 하여 왜관이 왜인의 양식만을 고수하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1724년에는 我國各色工匠이 동원되었고⁷⁹⁾, 1831년 이후의 수리 및 중수에는 본격적으로 조선공장이 동원되었다⁸⁰⁾. 결국 왜관은 일본의 양식으로만 이루어진 건물이 아니었으며, 시대에 따라 양식의 변천을 가진 건물임을 알 수 있다.

왜관경계의 내부에 있는 주요건물이 수리되고 있는 사이에 조선의 왜관관련 公廡가 함께 수리되고 있었다. 또한 왜관창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公廡가 창건되기도 하였다. 公廡의 수리는 주로宴享大廳과 草梁客舍에 관련된 것이었다. 순조 25년까지 기록된『邊例集要』에 따르면 草梁客舍의 수리는 1735년에 한번 있었지만⁸¹⁾ 다른 기록을 살펴보면 그 이후에도 수리가 계속된다. 1825년에 外三門의 改建⁸²⁾이 있었고, 1874년에 객사전체를 중수⁸³⁾하기도 하였다.宴享大廳은 1708년과 1738년에 重修⁸⁴⁾되었고, 1787년 出使譯官 金健瑞의 자원으로 개건되기도 하였다⁸⁵⁾.

새로 지어진 건물에는 訓導의 집무처겸 거주처인 誠信堂과 別差의 집무처인 任所가 있었으며 모두 1727년에 건립되었다⁸⁶⁾.

74) 각각 ‘釜山和館竣工圖’의 좌측부분과 ‘倭館圖’의 하단부분이 대官家の 배치된 자리이다.

75) 「增正交隣志」卷3(監董條)

76) 서관 3대청은 모두 일본양식으로 건축되었다고 한다.東館西館の六
大廳は勿論 是れ附屬の建物は皆 日本様式に建物し..... 「釜山府史原稿」

77) 「邊例集要」卷11(館宇條) 辛未 閏5月

78) 「邊例集要」卷11(館宇條) 辛亥 11月

79)我國各色匠人限畢役排日使役者..... 「邊例集要」卷11(館宇條) 甲辰 12
月

80) 「增正交隣志」卷3(條監董)

81) 「邊例集要」卷11(館宇條) 乙卯 7月, 「邊例集要」卷11 館宇 乙卯 10月

82) 道光5年 乙酉 三月..... 「草梁客舍重修謄錄」

83) 同治 十二年「草梁客舍重修謄錄」

84) 연향대청의 중수를 읊죽년 8월에 요청하고 다음해에 4월에 중수하라는 허락을 받게된다.宴享大廳 多有頽落 不可不趁今重修 故論報道臣事.

「邊例集要」卷11(館宇條) 乙丑 8月.....宴大廳重修使役軍 以各鎮軍卒

中使役 材木取用於絕影島水營封山等處 則似無難便之事.....回啓 誠為得宜 依啓施行. 「邊例集要」卷11(館宇條) 庚寅 4月

85) 「邊例集要」卷11(館宇條) 丁未 8月

新設되거나 加設된 關防에는 伏兵幕과 設門이 있었다. 조선정부는 草梁倭館이 설립된 뒤에 보다 철저한 관왜들의 단속을 위해 步行限界를 약정하고 設門을 설치하였다.

『增正交隣志』에는 1678(숙종 4)년에 府使 李馥이 왜인이 출입하는 곳에는限界를 엄격히 정해야 하므로 서쪽으로는宴享廳을 건너지 못하게 하고, 동쪽으로는客舍를 건너지 못하도록 하여, 이러한 규칙을 어긴 자는 對馬島로 보내자는 狀啓가 기록되어 있다⁸⁷⁾. 또한 1679(숙종 5)년에는 동래부사 李瑞雨가 差倭와 함께 측량하여 관왜들에 대한 새로운 步行限界를 條約으로 정하였다⁸⁸⁾. 그러나 새 규정을 정한 후에도 왜관의 越境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조정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1709(숙종 35)년에 設門을 설치하였다⁸⁹⁾. 그리하여 이곳에 동래장교 1명, 통사 1명, 문지기 1명을 배치하여 왜인의 僞越을 막고자 하였다. 또, 1739년 9월에 조정은 여인교간사건으로 인해 담장을 살피고, 三伏兵을 가설하여 六伏兵을 이루었다⁹⁰⁾. 1760년 10월에는 왜인이 炭幕등을 직통하는 폐단이 있어 六伏兵 가운데 南二伏兵을 移設하기도 하였다⁹¹⁾. 이러한 關防의 가설 및 이설은 館倭가 草梁閭閣에 머무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시행되어졌다. 왜관관련 朝鮮公廡 및 부속건물의 신설과 수리는 요청 즉시 이행되어졌는데 특히, 1735년과 1738년에 공사를 마친 草梁客舍와宴享廳을 수리할 때에 조정은 일본측의 끈질긴 東大廳 수리요청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허가를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조정은 朝鮮公廡의 중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면, 왜인이 偷毀한 곳은 조영하지 않으려 하였음을⁹²⁾ 알 수 있다.

3-3. 役價의 調達

왜관의 소유권을 가진 조정은 수리공사에서도 왜관 창건 때와 같이 역가와 물력을 조달하였다. 보통, 조정은 역가와 물력을 합산한 공사비용을 지급하였으며 때때로 왜인이 물력을 들여오기도 하였는데⁹³⁾, 왜관창건당시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에도 조정은 일본이 마련한 물력의 값을 지불하였다. 조정은 역가와 물력을 지급하여 왜인이 제작토록 하는 방법과 조선의 목수와 물력, 노동력을 들이는 방법 가운데 선택하여 공사를 이행하였다. 후자의 방법은 1831년부터 시행되었고⁹⁴⁾, 대부분은 전자의 방법을 통해 시행되었다.

86) 「東萊府志」草梁公廡條

87) 「增正交隣志」卷4(約條)

88) 「增正交隣志」卷4(約條)

89) 權以鎮은 設問을 設置하자는 의견을 내 놓았다. 「邊例集要」에 따르면 權以鎮은倭人이 訓·別의 집에 오기를 빙자하여 草梁閭閣에 머물기 때문에 만약 훈·별의 집 서쪽 담으로부터 바다에 이르는 4백보의 땅에 연이은 담을 쌓아 그 가운데 설문을 두어 사신과 군관이 주야로 守直하도록 하고, 設門 밖 3.400보 밖의 근처민가에 훈·별의 집을 짓겨 두고 훈·별의 집 앞에 通事廳을 옮겨두자고 하였다. 「增正交隣志」에도 '初無設門 肅宗三十五年己丑府使權以鎮始設'라고 기재되어 있어 숙종 35년에 설치된 사실을 더욱 명확히 해준다. 그러나 權以鎮이 의견대로 通事廳이 이 때 창건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90) 「邊例集要」卷11(館宇條) 己未 9月, 庚申 閏 6月

91) 「邊例集要」卷11(館宇條) 庚辰 5月, 1791년 12월에는 6처 伏兵 27間을材瓦를 더해 修補하기도 한다.

92) 「倭館移建隣錄」 가운데倭館看儕節目에 나타나 있다.

93) 「倭館修理謄錄」庚戌 4月15일

94) 「增正交隣志」卷3(館宇條)

최초의 大監董으로 사료되는 동서왜관수리의 경우 수리요구가 있던 해로부터 4년 동안 상기한 두 방법 가운데 최선책을 찾기 위해 공사허가를 내리지 않았다. 처음에 東萊府使 鄭灝는 왜측에서 館守倭家의 工費로 銀價 7,000냥에 별도의 物力(役軍이 포함된)을 요구하니 우리가 처음부터 담당하여 수리하자는 장계를 올렸다. 이에 좌의정 李世白은 전례대로 土卒을 사역하고 왜관근처 遊手와 役軍을 고용하자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안하고, 이를 허락하는 임금의 하교를 받게된다. 그러나 왜인들과 다시 가격을 논한 결과 7,000냥으로 책정되었던 역가가 5,000냥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명령은 번복되게 된다. 결국, 좌의정 李世白은 재목의 수가 많지 않고 平材의 길이가 달라 운반하기 어려우며, 기근과 역질로 왜관근처에 遊手를 모집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책정된 5,000냥의 역가를 기준으로 왜인들로 하여금 修改함이 나을 것 같다고 장계를 올렸다. 곧 이를 허락하는 임금의 전교가 내려졌으며 공사가 시행되게 되었다⁹⁵⁾. 이러한 사례는 당시 조선이 衙門의 탕갈을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주위를 기울였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왜관 수리비용의 조달 및 지급은 조선의 제정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었다. 大監董의 경우 수리규모에 따라 적계는 7,000냥에서부터 많게는 53,000냥에 이르는 막대한 수리비용이 지출되기도 하였다. 사료에 기재된 여러 수리 가운데 상세히 역가의 내역을 기록한 몇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02년 수리를 마친 東·西倭館 수리는 약 5,000냥의 銀價가 지급되었고, 館宇를 수리하는데 사용되는 재목은 對馬島에서 실어왔으나 그 물력과 역가를 합하면 약 7,000냥이 되었다⁹⁶⁾.

1724년에 수리를 마친 西館 三大廳 五行廊 重修⁹⁷⁾의 총 경비는 16,010냥 7전 2푼이며, 그 안에 조선의 노동인력도 동원되었다.

1740년에 수리를 마친 西館 東大廳 東行廊 수리는 <Table. 3>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8,809냥을 소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조선의 노동인력인 役軍이 5,730명이나 동원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왜관수리를 위해서는 많은 경비와 인력, 그리고 物力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특히 <Table. 3>에서는 왜목수와 조선목수에게 지급된 역가가 명시되어 그 차이를 분명히 살필 수 있다. 왜목수, 인거왜, 역부왜에게는 매일 각각 2전씩을 지급하였고, 조선목수는 매일각각 3전씩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창건당시와 달리 조선목수에게 더 높은 역가가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로서는 왜목수에게만 해당되던 화폐지급이 조선목수에게도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는 왜관 조영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첫째, 17~18세기 관영 영선을 기록한 의궤서 가운데 「景慕宮改建都監儀軌」에서만 이례적으로 목수의 역가지급에 화폐가 도입된 사실을 기록⁹⁸⁾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西館 東大廳 東行廊 수리보다 36년 뒤인 1776의 것이므로 西館 東大廳 東行廊 수리 때와 같은 경제상황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둘째, 西館 東大廳 東行廊 수리와 비슷한 시기에 인접한 장소에서

95)『倭館移建賸錄』, 庚辰 正月 20日, 庚辰 3月 21日

96)『倭館移建賸錄』, 『邊例集要』卷11(館宇條) 庚辰

97)『邊例集要』卷11(館宇條) 甲辰 12月

98) 金東旭, 前揭

Table. 3 1733년 東大廳 東行廊 修理의 役價와 物力價

(출전:邊例集要 卷11 館宇條, 庚申 8월)

匠人/赴役 및 物力	給價	급가내용 및 물력의 양
倭木手12명 引鋸倭 6명 役夫倭10명	1,142냥	七朔(204日) 每名 2전
我國役軍, 監官, 庫子	1,832냥	每日每名 役價 3전
地瓦35訥, 燔造時工匠役軍	473냥	料布雜費并錢
正鐵	164냥	1300斤 每斤 1전 5푼
炭	103냥	400여 섬, 每名價錢 2전 5분
冶匠	112냥	1일 2명씩 每石每日2전
我國木手	489냥	매명 8명씩 赴役 204일 매명매일 3전
假家所入草蓆 生葛 空石 藁草 簾索 草蓆	(각각의 物價 錢은 사료에 기록되지 않 음)	100番 100同 500立 50同 50同 50立
物價錢 合	83냥	
間間饋酒浮費錢, 雜物價錢	112냥	
令巡營先下鐵	4,200냥	(물력의 양은 사료에 기록되지 않음)
自大丘下釜山馬賈 錢	99냥	
총합계	8,809냥	

시행된 草梁客舍 수리(1737년)에 조선목수에게 料米가 지급된 사실과도 대조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좀더 정확히 규명하려면 언제부터 역가가 화폐로 지급되었는가에 대한 문제부터 밝혀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차후에 진행되어져야 할 과제이다.

왜관수리를 살펴보면 물력 지급의 다양한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데 크게 儲置米를 作錢하여 경비를 조성한 경우와 역관이고리대를 활용하여 경비를 조성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먼저 저치미로 경비를 조성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24년에 공사를 마친 西館 三大廳 五行廊의 重修 때, 조정은 경상도 각 고을에 있는 儲置米 9,000섬을 監董譯官에게 출급하

였다. 이에 監董譯官은 儲置米를 公作米로 相換하고 밀чин을 남겨(存本取贏) 역가를 지급하여, 가을에 本色米를 갖추어 납부하였다⁹⁹⁾. 이러한 방식을 통해 조정은 당년의 공사비 16,010냥 7전 2푼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1728년에 필역한 東館 三大廳 重修 때에도 조정은 儲置米를 활용하게 된다. 儲置米 1,550섬을 작전하여 7,000냥으로 경비를 조성하였는데 이를 監董譯官 金壽九가 전담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金壽九는 7,000냥으로써 館守倭家 93칸 밖에 조성하지 못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조정은 崔岱齊를 대임하여 나머지 114칸을 짓게 하였다. 이 때에도 金壽九가 偷食하여 부족한 경비를 儲置米 5,000섬을 이용해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¹⁰⁰⁾.

고리대(殖利)를 활용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방식은 왜관수리규모의 증가로 인해 자연스럽게 증가된 역가지급의 방편으로 활용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왜관수리를 담당하게 된 監董譯官들은 殖利를 통해 경비를 마련하였다. 이 고리대의 자본은 東萊府를 비롯한 지방관아의 재정이 비축된 것으로 마련되었다¹⁰¹⁾. 고리대의 자본으로는 공무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비축된 公木과 공작미와 대출한 官貨등이 이용되었으며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못하면 私錢을 대출하였다¹⁰²⁾.

1728년에 공사를 마친 東館 三大廳 중수때 監董譯官 崔岱齊는 수표로 公木 100통을 作米하여 殖利를 통해 왜관수리의 경비를 마련하였으며 이것으로도 경비조달이 어려워지자 私貸 4,000냥을 이용해 역가를 지급하였다¹⁰³⁾. 1740년 西館 東大廳의 행랑을 짓는 일에 監董譯官 朴春瑞와 玄德淵은 東萊府에 비축되어 있던 公木을 作錢하였다. 그들은 이것으로 殖利를 하여 인건비와 물력을 조달하였다¹⁰⁴⁾. 이러한 工錢의 조달방식은 왜관수리를 이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시에 역관의 私財를 중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사의 규모가 커져 많은 공사비용이 필요할 때에는 상기한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1715년 東·西館 三大廳 五行廊을 중수하는 일에는 조정에서 지급하는 公木 150통을 代錢하여 17,250냥을 만들었는데, 5,493냥은 東館의 監董官이 가져가고 나머지 11,756냥 6전을 西館 監董譯官이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하여 私貸를 가져가 쓰게 되었으며 또한, 監營과 統營에서 벌린 돈으로도 부족한 것은 鑄錢을 통해 마련하기도 하였다¹⁰⁵⁾.

이 외에도 1686년의 館守家 수리때는 監營에서 비축하고 있는 銀을 東萊府에 이송하여 먼저 왜관수리비용으로 조달한 뒤 각 읍의 대동미를 거두어 감영에 채워주는 방법을 쓰기도 하

99) 「倭館移建謄錄」 壬寅 3月 初9月, 「春官志」 卷3 (館修理條)에 잘 기록되어 있다.

100) 「倭館修理謄錄」 戊申 7月 27日

101) 僕學譯官은 관청고리대를 통해서 이미 고리대 운영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들은 주로 조선이 부담해야하는 왜관의 개·증축비용, 移館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리대를 하고 있었다. 양홍숙, 「17~18세기 僕學譯官의 對日貿易」,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50, 1797년에 공사를 마친 西館 東大廳 東行廊의 重修에는 南倉 濟民倉의 9,000냥을 빌렸다. 「邊例集要」 卷11 (館字條)

102) 「通文館志」에 기재된 사실을 토대로 하면 이러한 고리대는 왜관창건 때에도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通文館志」 제7 人物

103) 「邊例集要」 卷11 (館字條) 戊申 5月

104) 「邊例集要」 卷11 (館字條) 庚申 8月

105) 「邊例集要」 卷11 (館字條) 辛未 閏5月

였다¹⁰⁶⁾. 1780년과 1801년 東·西館 수리 때에는 年例送使를 정지하여 왜관수리비용을 조달하기도 하였는데¹⁰⁷⁾, 이를 계기로 1801년부터는 왜관수리 동안의 연례송사비를 減去하는 전례가 생기게 된다.

이처럼 조정은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저치미를 作錢하는 방법과 殖利를 활용한 방법으로 해소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도 부족분이 발생하면 鑄錢이나 대동미를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공사비 조달을 위한 차선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도 하였다. 왜관관련 朝鮮公廨의 수리비용도 상기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조달되었다.(<Table. 5>참조.)

1737년 공사를 마친 草梁客舍의 修改에는 도합 962냥 4전 1푼이 소요되었으며, 이 修改工事에 마련된 돈은 南倉錢 1,000냥을 이자없이 빌려서 立本取贏한 것이었으니, 앞서 서술한 왜관수리와 비슷한 방식을 통해서 역가와 물력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朝鮮公廨의 수리는 비교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수리요청이 생기면 지연없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물력을 갖추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草梁客舍의 수리인데, 封山부근의 風落木을 각별하는 방식을 취했다¹⁰⁸⁾.

또한 1737년 宴享大廳의 수리 때에는 絶影島에서 목재를 얻기 어렵게 되자 右道봉산에서 얻도록 하였다¹⁰⁹⁾.

역가지급 문제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출사역관 金建瑞의 활약은 왜관일대의 책임을 맡은 임관의 朝鮮公廨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金建瑞는 1787년 8월에 私錢 1400여 냥을 변통하여 宴享廳 수리비용을 해결하였고¹¹⁰⁾, 1791년에는 金徽重과 함께 私錢 700여 냥을 들여 6처 伏兵 27칸의 수보를 시행하기도 했다¹¹¹⁾.

3-4. 監董譯官의 活動과 修理工人

草梁倭館의 수리는 釜山鎮이 주관하고 각 鎮에서 나누어 담당하였다. 西館의 東大廳 가운데 第 1船 送使가 머무는 곳은 多大鎮이 西行廊은 豆毛鎮이, 東行廊은 多大鎮이 각각 나누어 수리를 담당하였다. 參判使가 머무는 中大廳(參判館)은 包伊鎮이 담당하였고, 中大廳에 부속된 西行廊과 東軒 2칸은 西生鎮에서 西軒 2칸은 開雲鎮에서 각각 수리를 하였다. 副特送使가 머무는 西大廳은 西平鎮에서 나누어 수리를 하였다. 또한 선창은 豆毛浦, 開雲浦, 包伊浦, 多大浦등의 각 鎮에서 나누어 담당하였다. 이는 草梁倭館 이전의 왜관인 豆毛浦倭館의 수리가 부산진의 전관 하에 이루어졌던 사실과 매우 다른 것으로, 豆毛浦倭館 시절에 비해 규모가 증가한 草梁倭館의 수리를 효율적으로 담당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즉, 조정은 왜관창건의 경험을 통해 체계적 수리절차를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감동관의 차출은 조정의 그러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왜관창건 때에는 訓導와 別差가 조선의 명령과 왜측의 요구사이에서 왜관행정전반의 문제와 더불어 감동문제에 관한 현안을 타결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지만 수리 때에는

106) 「邊例集要」 卷11 (館字條) 丙寅 10月

107) 「邊例集要」 卷11 (館字條) 戊寅 12月

108) 「邊例集要」 卷11 (館字條)

109) 「邊例集要」 卷11 (館字條) 丁巳 閏9月

110) 「邊例集要」 卷11 (館字條) 8月

111) 「邊例集要」 卷11 (館字條) 辛亥 12月

監董譯官을 두어 감동에 관한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監董譯官은 처음엔 한 명만 전담하다가¹¹²⁾ 공사규모에 따라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¹¹³⁾. 1745년과 1801년처럼 東館과 西館을 동시에 수리할 때에는 東·西館을 나누어 감역토록 하였으며, 東館보다 규모가 큰 西館에 한 두 명의 監董譯官을 더 임명하기도 하였다¹¹⁴⁾.

이들 監董譯官은 訓導·別差를 거친 倭學譯官으로써 창건 당시의 訓·別에게 일임된 것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監董譯官이 수행하는 임무의 성격은 기존의 訓·別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監董譯官은 오로지 왜관수리 관련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임명된 역관이며, 監董에 관련된 모든 일의 책임자였다. 이들은 差倭와 직접 상견하고 그들의 수리요구를 수긍하거나 책유하는 임무를 가짐과 동시에 물력과 역가지급에 관한 사항 또한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수리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아닌지는 監董譯官의 활동에 달려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役價와 物力價를 조달하는 경제적 급원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은 監董譯官의 역할을 살펴 적절히 論賞하기도 하였다.

당시 監董譯官은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때때로 이들은 일본인과 공모하거나 과다하게 왜관수리비를 책정하여 개인적 이익을 피하기도 하였다. 1728년에 공사를 마친 東館三大廳重修 때에는 감동역관 金壽九의 偷食으로 도중에 감동역관이 遷易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倭學譯官이 왜관 건물의 수리공사에 감동역관으로 참여하면서 사적인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倭館看儉節目에 따르면 訓·別은 매월 초하루가 되면 왜관에 들어가 건물들의 상태를 일일이 기록하고, 수본을 작성하여 東萊府에 올리게 되어있었다. 이 때 역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조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요경비와工期가 줄어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폐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감동역관의 활동은 왜관수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

1698년에 訓導 朴有年과 朴再興은 수리하는데 필요한 소요비용을 정확히 摘奸하여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측이 요구하는 대로 7,000냥을 책정하여 유배당하기도 하였다¹¹⁵⁾.

또한 監董譯官 金壽九는 1728년에 館守倭家 73칸, 大門 18칸, 中門 18칸, 開市大廳 60칸, 裁判倭家 46칸, 大門 2칸, 中門 1칸 등 도합 204칸을 수리하기로 결정하고 儲置米 1,550섬을 作錢 한 7,000냥을 지급 받아, 겨우 90여 칸만 조성하여 도중에 공사를 중지해야 했다. 그는 儲置米 1,550섬을 작전하여 조달된 6,795냥 가운데 4,035냥 1천 4푼만 공비로 사용하고, 倭匠에게 지급할 역가로 은 363냥 6전과 粮米 3,000섬도 지급하지 않고 偷食하였던 것이다. 조정은 舊材와 舊瓦를 사용하였음에도 館守倭家 90칸만 겨우 조성한 壽九를 수상히 여겨 崔岱齊에게 監董譯官을 임명하였다¹¹⁶⁾.

112) 1690년에 공사를 마친 관수왜가 수리때는 韓天錫이, 1702년에 공사를 마친 東·西倭館修理 때는 박재홍이 감동관으로 활약하였다. 「倭館移建謄錄」, 「邊例集要」 卷11 館宇

113) 「倭館移建謄錄」 壬寅 5月 初10日

114) 「倭館移建謄錄」, 「倭館修理謄錄」, 「邊例集要」

115) 「備邊司謄錄」 숙종 28년 5월 3일

116) 경상감사 박문수의 장계에 김수구가 투식한 실상이 자세히 기재되어

상기한 바와는 반대로 임무에 충실한 역관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 없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監董譯官은 金建瑞였으며 조정은 적절히 論賞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修理處 摘奸, 공사비의 상의 및 책정, 공사비 소요정도의 일차적 결정권이 감동역관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일차적인 수리 집행자는 감동역관이었던 셈이며, 그러한 이유로 이들 감동역관의 활동이 왜관수리공사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그들의 활동은 間架의 數나 공사 정밀도와 같은 조영전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수리공사의 집행자를 감동역관으로 본다면 실제조영을 담당한 주체가 누구였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조정은 21건 가운데 14건이나 되는 수리공사에서 왜목수로 하여금 家舍를 제작하도록 하고 공사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 왜측에서 보내온 공사인력에는 監董頭倭, 木手倭, 引鋸倭, 泥匠倭, 役夫倭등이 있었다. 이들은 공사규모에 맞추어 숫자를 달리하였지만 일관된 구성을 한 하나의 공사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공사집행관리로 보이는 監董頭倭(修理次知倭, 監董次知倭)가 工匠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工匠에는 일반공장인 各色工匠倭, 木手倭, 미장담당인 泥匠倭등이 있었고 그 외에 잡역을 맡은 役夫倭와 부재의 마름질을 맡은 引鋸倭등이 수리공사에 참여하고 있었다¹¹⁷⁾.

조선의 인력은 단순한 잡역을 맡은 역부에서 技術工匠人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었다. 공사초기에는 주로 왜측에서 기술자를 제공하고, 조선은 역군과 같은 단순 잡역부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¹¹⁸⁾, 이후에는 조선에서도 적극적으로 수리공사에 참여하는 추이를 보인다¹¹⁹⁾. 1724년에 마친 西館 三大廳 五行廊의 중수에는 조선인력(我國各色工匠)의 참여가 있었으며, 1733년에 마친 西館 三大廳 五行廊 수리에도 조선장인과 역군의 연인원이 5,730명에 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왜관수리를 통해 조선과 일본은 서로의 조영기술을 교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또한, 1831년 이후의 왜관수리는 본격적으로 조선목수들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¹²⁰⁾. 이러한 조영인력구성의 추이를 통해 왜관 양식의 변화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창건을 위해 倭木手 150명을 부산포에 이첩시킨 사실이나 倭館을 장지로 수장한 사실은 草梁倭館이 창건 때부터 일본양식

있다. “監董譯官 金壽九가 204간의 價銀을 偷食하여 다만 90칸을 지움이 진실로 무상합니다. 고로 金壽九 대신 崔岱齊로 하여금 김수구가 짓지 않은 집 114칸을 조성하게 하옵소서.....”『倭館修理謄錄』 戊申 7月 27日

117) 「倭館移建謄錄」, 「倭館修理謄錄」

118) 첫 대감동으로 사료되는 동 서왜관수리 때에 조선이 價銀 외에 들일 물력 가운데 역군이 포함되어 있었다.上項折價銀外所入役軍及蓋瓦, 檻子, 根木, 蓋竹, 蔗草, 薦索, 山麻索, 葛索, 雜物別爲備給爲良沙可以擔當修理... 「倭館移建謄錄」 戊辰 正月二十日

119) 「倭館修理謄錄」 己酉 10月 12日

120) 「增正交隣志」에는 1831년부터 왜관공사에 우리나라 工匠을 쓰기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邊例集要」 및 「倭館移建謄錄」에 따르면 1831년 이전에도 조선공장이 왜관공사에 동원된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增正交隣志의 기록」은 1831년부터 조선공장의 주체로 조영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으로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1791년 開市大廳을 개건할 때에도 대청 대들보 상부에 중첩된 장식 등의 일본양식을 이루기 위해 倭工匠을 사역하였던 점이나, 왜관 내부에 多多味家를 설치한 점과 木手倭家를 설치한 점은 수리기간 가운데에도 草梁倭館을 일본양식으로 유지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기간에는 조선목수와 왜목수가 함께 수리공사에 참여하였으므로 내부적으로는 양국의 조영기술이 교류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31년 이후의 수리는 조선목수들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조선공장들은 이미 초기의 수리기간동안 일본목수와 함께 수리에 참여하여 일본가사의 규제를 익혔으므로 왜관양식을 조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왜인의 양식을 그대로 지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시기는 상반된 대외의식과 易地通信에 의해 교린체제가 변질되어 가던 무렵이었으므로 조선이 일본양식의 건물을 유지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春官志』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양식의 부재는 그 단면이 가늘기 때문에 쉽게 부식되어 바닷가에 자리잡은 왜관에는 적당치 않았다. 그러므로 조선목수들은 왜인의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범위 내에서 일본양식을 지켜주었을 것이다. 이처럼 草梁倭館은 수리기간동안 양국의 조영활동 교류를 통해 양식의 변화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상의 초량왜관의 창건·수리 및 중수에 대한 변천사항을 <Appendix. 2>에 정리하였다.

4. 草梁客舍의 造營活動

草梁倭館이 創建되는 1678년부터 革罷되는 1873년 까지 약 200년간 倭館인근에 존치되었던

草梁客舍는 王을 상징하는 殿牌를 奉安하여 조선에 渡來한 일본사신들의 肅拜式을 수행하던 장소로서, 倭使를 맞아 연회를 베푸는 곳인 宴享廳과 더불어 중요한 대일외교관련 의례를 행하던 건물이다.

이 건물은 本府客舍와 기능적 측면에서 구별되었고, 왜관으로부터 동쪽으로 3리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勳別廳 및 出使廳등의 건물과 이웃하였기 때문에 草梁公廡로 분류되어 관리되었다. 草梁公廡는 왜관의 수리나 중수공사를 담당하던 監董譯官 및 訓導·別差들에 의해 훠손정도가 적간되었으며, 때때로 왜관과 수리시기를 같이 할 경우 왜관감동역관이 초량공해를 담당하기도 하는 등, 왜관과 관련된 임무를 지닌 자들에 의해 관리되던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草梁公廡의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草梁倭館과 유사한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초량객사 창건 때 초량왜관 공사에 동원되었던 조선목수 중 20명을 차출하여 役所에 보낸 일¹²¹⁾을 통해서도 상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량공해는 분명히 왜관과 구분되는 성격의 조선총공해였는데, 倭館의 外牆을 경계로 왜관 밖에 조성되어 있었기에 위치적으로도 왜관과 구분되었고, 공사 진행방식 또한, 왜관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조영되었던 것에 비해, 초량공해는 지방자치행정 하에 자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121) 『邊例集要』 卷11 館宇 丙辰 7月

하지만 초량공해는 유구가 잔존하지 않고, 기록 또한 왜관관련사료 가운데 極小하게 남아있어, 그 조영과정의 전말을 찾 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草梁公廡의 건축적 사료로는 유일한 「草梁客舍重修謄錄」¹²²⁾을 중심으로 초량객사의 건축적 내용, 조영절차, 공사인력의 구성, 역가 및 물력의 지급 등을 살피고, 초량객사의 조영전말을 파악하여, 초량객사로 대표되는 초량공해의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4-1. 草梁客舍의 沿革 및 內容

조선후기 부산에는 지방관제에 의한 객사인 東萊府 客舍와 외교관계에 의한 草梁客舍가 각각 존재하였다¹²³⁾. 초량객사는 초량왜관이 신설되면서 그 주변에 세워진 객사이므로, 초량객사가 처음 창건된 때는 초량왜관이 창건되던 1678년이다. 그런데 초량왜관 이전에도 왜관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외교적 성격을 지닌 객사가 초량왜관 이전에 존재하였는지, 존재했다면 최초의 외교관련 객사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邊例集要」 권11 館宇條에는 초량객사를 신설하는데, 豆毛浦 倭館(舊館)의 客舍와 宴享廳, 公須廳을 補充한 舊材를 이용하여 조영한 기록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초량객사 이전에 두모포왜관에 부속되어 倭使 肅拜를 행하는 객사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豆毛浦 倭館이전의 외교적 성격을 지닌 객사의 존재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왜인들이 부산에서 倭使肅拜한 이유는 임진왜란 이후 상경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임란 이후 부산왜관(絕影島假倭館, 豆毛浦倭館, 草梁倭館)주위에는 倭使 肅拜式을 행할 수 있는 객사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다.

두모포 왜관은 연향청을 중심으로 동서관이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두모포 왜관 창건 당시, 1572년) 연향청을 중심으로 왜관건물이 배치된 사실을 말해주며, 같은 조선공해인 객사도 동시에 함께 조영되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두모포 왜관 시절에는 객사에 대한 기사를 찾아볼 수 없고, 조선 公廡 중에서 연향대청의 移設 및 重創, 公須家

122) 규장각도서(奎18136)로서, 각사동록(v.13: 경상도편3)에 영인되었으며, 「草梁客舍外三門改建謄錄」과 「草梁客舍重修謄錄」의 2책으로 되어 있다. 각 책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책: 「草梁客舍外三門改建謄錄」. 1825년(純祖 25) 3월부터 1826년 11월까지 東萊府草梁에 있는 客舍外 三門을 改建한 기록이다. 수록된 문서는 釜山僉使와 巡營·水營 이하 釜山面任 등간의 移文과 檻報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제2책: 「草梁客舍重修謄錄」. 1846년(憲宗 12)에 草梁客舍를 修改한 이후 기동·기와·창·벽·담장 등毀傷된 곳을 1874년(高宗 11) 8월에 重修한 기록이다. 移文·傳令·私通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123) -첫째, 궁중에서 신하들이 임금에게 賀禮를 하듯, 객사의 殿廳 북벽 중앙벽감에는 闕牌와 殿牌를 놓고 임금에게 遙拜하는 전당으로 삼아 고울의 守 승이 새로 부임해 왔을 때, 초하루와 보름, 또는 國慶日에 向觀拜함으로써 임금을 지척에 모시듯 충성과 목민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던 곳이다.

-둘째, 客舍는 중앙에서 파견된 賓客을 맞이하여 詔書와 명령을 받들어 임금의 威德를 선포하고 行禮하던 곳이며 이들을 위해 연회와 가무가 배풀어지고, 숙식을 제공하였던 곳으로 殿廳 좌우에 東·西翼軒이 있다.

-셋째, 東翼軒은 東班職이 쓰는 大廳으로 관찰사는 이곳에 앉아 소송을 들고 판결하는 재판정으로도 사용하였으며, 西翼軒은 西班이 사용하는 大廳으로 巡撫, 按察의 임무를 행하였던 곳이다. 따라서 권위와 위의가 염하였다.

-넷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국의 使臣(中國,倭, 기타 野人)을 맞이하였던 곳이었다. 柳泳秀, 『朝鮮時代 客舍建築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碩士學位論文, 1989

蓋覆 정도의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邊例集要』 卷11 館字條에서 조선공해에 관한 기사만을 가려내어 정리하면 다음의 <Table.4>과 같다. (초량공해 가운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草梁客舍와 宴享廳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東萊府誌』, 『釜山府史原稿』 및 『草梁客舍重修贊錄』의 기록을 참고하였다.)

Table. 4 왜관 주변 조선측 公廡의 工事沿革

두 도 포 관 시 대	年度	工事내용
	1572	두모포왜관 設館時 無贊錄
포 왜	1601	두모포왜관 및 연향청 창건 (1611년 倭館排造形 止참고)
관 시	1611	大設水門, 연향청을 동관 동쪽으로 이설, 公須家 蓋覆 上樑
대	1654	宴享大廳 重創
	1660	船艙修築
초 량 왜 관 시 대	1678	4월: 초량왜관 신설(연대청과 함께 낙성), 초량왜관 신설시 宴大廳은 新材로 造給. 객사 및 훈별이 접할 家舍의 移建문제를 논의 함. 5월: 草梁客舍 를 舊館(豆毛逋倭館)의 宴享廳 舊材 로 造給
	1686	宴享廳수리(『東萊府誌』)
	1707	通事廳신설
	1709	草梁客舍수리(『釜山府史原稿』), 宴享廳修理 (『東萊府誌』)
	1734	草梁客舍修理始役
	1737	草梁客舍修理畢役
	1737	宴享大廳後面柱木動退하여 修理
	1740	伏兵加設
	1760	南二伏兵을 釜山大峴要路에 移設
	1787	譯官 金健瑞 私錢으로 宴享廳 改建
	1791	6처 伏兵 27칸 修補
	1825	草梁客舍外三門改建
	1873	草梁客舍重修

초량객사는 초량왜관의 창건부터 혁파까지 존재하였으며, 1678년 草梁客舍 創建이래로 총 6회 이상의 중수공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기록에 남아있는 수리공사는 1709년의 초량객사 수리, 1737년 초량객사 중수, 1825년 草梁客舍外三門 改建, 1873년 草梁客舍重修와 정확한 년도를 알 수 없는 신축년의 외삼문개건, 병오년의 중수 등이 그것이다¹²⁴⁾.

『增正交隣志』에 의하면, 조정은 부산에 오는 왜인에게 정청

124) 辛丑年 前例는 초량왜관 창건 이후부터 신축년 전례를 언급하는 초량
객사 외삼문 개건이 일어나던, 1825년 사이의 신축년에 일어난 외삼문
개건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1825년까지의 왜관 및 초량공해
의 공사내용을 염불 수 있는 자료인 『邊例集要』 卷11 館字條에도 이러한
신축년 전례를 찾아 볼 수는 없었다. 다만 신관이 조영된 1678년
이후부터 1825년 사이의 신축년은 1721년과 1781년이므로 이 둘 중 하
나가 1825년에 언급하는 신축년 전례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같은 방
식으로 병오년의 전례는 1726년, 1786년, 1846년 중의 하나로 추측할
수 있다.

과 동·서현(西軒) 44칸, 중문 3칸, 좌·우익랑 2칸, 문 3칸의 규모에 단청으로 단장된 초량객사¹²⁵⁾에, 먼저 들러서 조선역대 국왕의 殿牌를 숙배(肅拜)¹²⁶⁾하게 하였다고 한다. 객사의 규모는 각 사료마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 『東萊府誌』 草梁公廡條에는 客舍 3칸, 대문 3칸, 중문 3칸으로, 『春官志』 卷3 倭館條에는 客舍 24칸으로 기록되어 있다. 각 사료의 편찬년도가 동래부지는 1740년(英祖16), 춘관지는, 1744년(英祖 20), 증정교린지는 1802년(純祖 2)인 점을 고려하면, 객사가 여러 번 중창되면서 間架의 증축도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825년의 『草梁客舍外三門改建贊錄』에는 외삼문의 규모가 이층 누각에 3포작 5량집으로, 9칸이었다 하고, 1873년 『草梁客舍重修贊錄』에는 정청 15칸, 동현 15칸, 서현 15칸, 중문 6칸, 좌우익랑 4칸, 외대문 9칸으로 객사 전체 규모가 64칸에 墻垣이 255把 라고 하였으니, 『增正交隣志』에 기록된 규모보다 더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740년에 편찬된 『東萊府誌』에서 소규모로 조영된 초량객사가 1802년 편찬된 『增正交隣志』에서 갑자기 間數가 증가되어 기록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17~18세기에 조선과 일본의 활발한 무역활동이 전개되면서 조선에 올 다수의 왜사들을 위한 초량왜관의 間架 증축이 한창 일어났던 때와 같은 시기의 일이기 때문이다.

4-2. 草梁客舍의 造營節次

1825년(純祖25년)3월부터 이듬해인 병술년 11월 2일까지 초량객사외삼문의 개건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한 「草梁客舍 外三門改建贊錄」에는 처음 공사처를 摘奸한 내용으로 시작하여, 객사 외삼문이 퇴압한 이유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주로 목재구입에 대해 釜山鎮과 水營 및 巡營사이에서 논의한 公文을 중심으로 상술되어 있다.

신축년 전례를 따라 1825년 3월에 정한 수리 규칙을 그대로 따르기는 현실적으로 무리인 까닭에 수영에서 他 封山을 살펴보도록 하는 감영의 공문이 있었는데, 수영은 이러한 사항을 받아들여 沙下 金峙封山과 梁山 內浦封山의 작별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封山지정의 문제는 수영과 동시에 監營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였다. 「草梁客舍 外三門 改建贊錄」의 乙酉年 11月 28日條에 따르면, 재목의 砍伐 및 運送에 관한 조목을 水營과 巡營에 동시에 報狀하였는데, 전체적인 재목의 작별 및 운송에 관해서는 수영에 關文이 보내졌고, 金峙·內浦封山 劃給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監營에 關文을 보내고 있다. 釜山鎮에서 수영과 감영에 재목수취를 요청하는데는 같은 관문이 발관되지만, 순영에 관문이 도착하지 않아서 공사를 지연하고 있다가, 그 해 겨울에 題文을 받아 이듬해 2월에 砍伐를 시작하였는데,¹²⁷⁾ 이때, 釜山面任의 지시에 따라 里任이 부역을 거느리게 했으며, 釜山面의 煙丁으로써 부역하게 하였다. 또한, 草梁洞任은 洞民을 거느려 假家木을 絶影島에서 작별하고 운반케 하는 등, 役所에서 발생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수영보다는 감영의 허가가 내려져야 작별이 시행될 수 있었

125) 『增正交隣志』 卷3, 館字 ,

127) 『草梁客舍外三門改建贊錄』, 丙戌 2月 21日

다. 그러나 실제 재목회급의 내용은 부산진과 수영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감영이 상급행정기관임에는 틀림없었으나, 오히려 실제 작별할 때는 각 병영의 伺候船을 이용하거나, 奉足軍을 각 鎮浦의 방군으로 사역하는 등¹²⁸⁾, 군사력을 동원하는 문제가 발생되었기에 수영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즉, 부산진에서 재목작별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적인 작별허락은 감영을 통해서, 실질적인 작별과정에 대한 상의는 수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1873년(高宗10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 까지, 草梁客舍의 중수과정 및 客舍殿牌의 移安과 還安과정을 기술한 『草梁客舍重修謄錄』에서는 『草梁客舍外三門改建謄錄』보다 더 상세한 각 관청 사이의 문서유통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1873년 초량객사의 중수는 이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東萊府에서 役事を 전임하고 있었는데¹²⁹⁾, 동래부는 관치행정계통의 상부기관과 자치행정계통의 하부기관 사이에서 문서의 상·하달을 동시에 주관하는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다.

東萊府使는 목재를 구하거나 烟丁을 구할 때 자치행정기구에 傳令하고, 役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적극적으로 조달해주고 있는데, 이 같은 공사인력 및 물자조달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행해졌다.

첫 번째 방식은 留鄉所에 알려서 各面에 보고 하도록 하여 필요한 물품을 얻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水營에 報狀하여 수영 隸下의 釜山鎮과 多大鎮 및, 兩鎮예하의 四浦萬戶의 물력과 인력을 동원하는 것이다¹³⁰⁾.

草梁客舍 修改의 문서유통절차는 留鄉所에서 面·里任으로 연결되는 재지사족 중심의 자치적 행정계통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왜관공사와는 비준되는 사실로 草梁公廨의 수리가 자치적 비교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초량 왜관의 創建時 문서유통과정을 살펴보면 훈도·별차의 手本이 부산진 첨사를 거친 후 동래부사의 장계를 통해 경상감사에게 보고되어 조정에 까지 이어졌는데¹³¹⁾, 초량왜관의 修補時에도 먼저 훈·별의 보고가 사실인지 아닌지 조선공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기구에 의해 전달되어, 중앙기구는 단순히 통보받은 바에 대해 일확인한 후, 다시 본부로부터 부산감색과 훈·별을 함께 發遣하여 훼손정도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문서가 유통되었다. 왜관수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왕의 전교를 받아야 시행되었으며, 役所를 摘奸한 결과를 비변사에 成冊하여 알려야 했다¹³²⁾. 이처럼 초량왜관의 창건 및 수리공사에 대해

128) 『草梁客舍外三門改建謄錄』, 丙戌 2月 21日

129) ...行府使主教是臥乎事. 7月 22일 水營監役所踏印私通, 『草梁客舍重修謄錄』, 各司謄錄13.

130) 癸酉 8月 3日, 釜山鎮, 移文, 『草梁客舍重修謄錄』

131) 1675년 윤5월 7일에 동래부사는 훈도, 별차의 수본과 함께 부산첨사가 직접 왜관을 적간하고 상부에 보고하였는데(『倭館移建謄錄』, 乙卯閏5月初7日), 감동차와 공장역부를 포함한 70명의 倭人이 초량에 이집한 것을 수호차 적간하고 통보한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인 예는 아니다. 1675년 윤5월 16일, 접위관 柳譚厚, 동래부사 魚震翼의 장계를 보면, 수역 金勤行이 手本을 올린일이 있는데(『倭館移建謄錄』, 乙卯閏5月16日) 이 또한 특별한 경우이다. 즉, 몇몇의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도와 별차가 직접 차례를 만난 후 왜측의 요구사항을 상부에 보고하고, 조정의 명령을 왜측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32) 『邊例集要』, 卷11 館宇, 辛亥 11월, 丁巳6월

서는 수령-감사-국왕으로 이어지는 중앙국가기관이 강력한 통제를 가하였고, 초량객사로 대표되는 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4-3. 工事人力 및 物力出處

1825년의 초량객사와 삼문개건공사와 1873년 초량객사 중수공사 상호간 시기적 격차는 크지 않지만, 각 공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인력의 구성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草梁客舍 外三門改建謄錄』은 封山에서의 재목수취를 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서 감동인력 및 공사인력이 일반건축관련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과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研伐 및 曳運을 주로 다루고 있는 재목의 수취에는 주로 순영이나 수영의 지시에 따라 差定된, 차사원의 활약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 차사원은 監斫차사원, 材木曳運차사원 등으로 역할구분이 되어있었다. 1825년 11월 28일 순영의 諜報에 따르면, 監斫 차사원은 左道邊將중에 차정하였는데, 이는 원래 왜관재목을 감작하는 開雲浦 萬戶라 하였다. 또한 材木曳運 차사원은 各道邊將중에 차정되었다. 이들은 봉산 지방관이 거느리는 監斫木手, 材木研伐木手, 曳下水邊의 役, 및 匠手, 奉足軍을 감독하고, 재목을 수취하는 방법이나 役軍을 동원하는 방법에 대한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는 업무를 지닌 자들이었다¹³³⁾. 특히, 상기한 감작차사원의 경우, 왜관재목을 감작하는 개운포 만호였다는 점에서 당시 왜관재목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취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데, 왜관관련사료에서도 '材木研伐曳運及船價錢 四百二十七兩 三錢', '浮梯假家木研伐及載運軍 五十四兩 二錢'과 같은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어서¹³⁴⁾, 왜관에서의 재목수취방식(재목작별 및 曳運에 관한 부역문제)이 초량객사의 그것과 같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재목의 작별은 주로 봉산부근의 각 浦에서 담당하였는데, 외삼문 개건공사는 개운포 만호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며¹³⁵⁾, 開雲浦에서 多大鎮封山色에 私通을 보내어 일부 船材와 家材의 작별을 다대진의 山農之民에게 맡기도록 하였다. 이들 차사원 및 담당관들에 의해 작별에 관계된 인력들이 고용되거나 부역되어졌던 것이다¹³⁶⁾.

재목의 수취가 순영의 지시로 개운포 및 다대진에 담당되던 것에 반해, 실제 수리공사는 釜山鎮 및 東萊府에 의해 지시되고 있다. 蓋覆당시에 부산진에서 수리감색과 設門將을 파견, 漏濕朽傷의 폐단이 없도록 하였으며, 개기공사에 임박해서는 부산면임이 동민을 동원, 작별하고 幕舍를 짓도록 하였다. 丹臘

133) 차사원은 경상좌도 중 각 진포 변장 중에 한시적으로 차정되어 봉산의 재목작별을 감독하는 감독관의 임무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들의 지시 하에 監斫木手, 曳下水邊의 役·匠手·奉足軍이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

134) 1724년 서관 삼대청 오행랑 중수 가운데 기록, 『邊例集要』 卷11 館宇, 甲辰 12月

135) 梁山, 內浦 재목의 작별에는 각 鎮浦兵의 伺候船 및 사공과 결군, 장수, 봉죽은 모두 개운포 만호가 分배지위토록 하였다. 監斫差使員開雲浦萬戶爲移牒事, 『草梁客舍 外三門改建謄錄』 丙戌 3月 初7日,

136) 내포재목은 장대하여 특별히 이를 재단하는 도목수가 동원되었는데, 이러한 도목수는 고용된 기술자라고 생각되며, 다대진 봉산의 斎軍에게 공개를 거행하였으나, 일종의 고용된 노동자였다고 볼 수 있겠다.

(단청)할 畵工 및 奉足은 동래부에서 담당하였다¹³⁷⁾. 이처럼 외삼문개건공사는 부산진의 주관 하에 각 물력 및 인력을 領率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다¹³⁸⁾.

1873년에 시작된 초량객사 중수에는 감동조직이 명확하게 구성되었다. 이는 객사 전체가 수리되는 중수공사의 규모가 외삼문 개건공사의 규모보다 방대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1873년 8월 3일 始役을 위해 잠시 永嘉亭에 이인한 殿牌를同年 9월 초하루에 還安하면서 동래부가 상부에 보낸 장계에는 감동인력과 각 소입 물력 및 역종 등이 소상히 등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감동인력을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5>와 같다.

감동직에는 前 察訪 金箕斗를 필두로 개운·두모만호, 훈도·별차, 좌수유학 등이 차정되어 있었다. 策應監官에는 折衝 將軍 李基永이 겸직하고, 그 아래 折衝 金啓默, 色吏 邊宅浩가, 成造監官 朴斗演의 지휘하에 절충 鄭漢鳳 및 色吏들이 각각 차정되었다. 이들의 직종을 살펴보면 외직 문관인 칠방 출신이 만호·절충과 같은 무관을 거느리고, 그 아래 훈도·별차가 항소의 향임인 좌수를 거느리며, 좌수가 다시 이방을 거느리는 지방 자치적인 조직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기한 감동 인력의 감독아래 목수, 이장, 석수, 치장, 인거장들이 그들의 임무를 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각색장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조영활동을 하였을까? 18세기 이후 관청영선에서 공장이 정당한 대가의 노임으로 고용되는 제도가 정착되고, 또 지방 각 군현으로 널리 분산되었던 공장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전축공장이 공조산하의 관서나 군영에 등록되어 관청영선에 부역 동원되는 사례는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이며, 관청영선은 민간건축공장에 의해 진행되었다¹³⁹⁾. 초량객사 중수에 참여한 목수이하 각색공장들이 7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錢2401냥 5전 4푼을 받고 역에 종사하면서도 성실히 임하지 않고 때때로 기일을 지체하는 것을 지적하는 조목¹⁴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예전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영공사의 성격상 이를 공장 역시 전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追 卽者分付內 木手不爲起送 是何舉行耶 未到木手姓名 ——
錄上亦教是如乎 到卽錄上次 木手 金末象 卽爲押送次¹⁴¹⁾引
鋸匠段 其間已到爲幾名 未到爲幾各是喻 消詳指名回通爲旤.....
木手 金日坤 瓦匠 金荷實 金庚實 並爲押送.....¹⁴²⁾

137) 이 봉족군은 화공의 조수로 사역됨과 동시에, 삼문 翼廊의 修葺을 위한 인력이었다. 「草梁客舍 外三門 改建臘錄」,丙戌, 11月2日

138) 地瓦燔造의 役은 부산면임의 往問아래 동평, 남하, 대연, 용호, 남천里任이 인솔하여 부역하였다. 「草梁客舍 外三門 改建臘錄」,丙戌, 3月初1日

139) 金東旭은 19세기 8건의 의궤(현사궁별묘영진도감의궤, 서궐영진도감의궤, 창경궁영건도감의궤, 창덕궁영건도감의궤, 종묘영녕전증수도감의궤, 인정전증수의궤, 남전증건도감의궤)에 하나도 예외없이 공장의 소속관서가 명시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시기에 공장이 어떤 관서에 소속되는 제도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金東旭, 「韓國建築工匠史研究」,技文堂, 1993. pp.242~243

140) 匠色輩憑藉節目.....癸酉8월 14일 草梁出使 左兵校處傳令, 時日急迫匠色輩敢不聽從.....癸酉8월 15일 看役藍色處傳令「草梁客舍重修臘錄」

141) 役所了私通答草, 「草梁客舍重修臘錄」癸酉7월 24일

142) 役所了答私通, 「草梁客舍重修臘錄」癸酉7월 27일

이라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本府에서 지정하는 木手들은 그들의 성명이 看役藍色에 의해 장부에 기록되고, 그것을 근거로 관청의 통제 하에 활동하고 있었다.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役夫募立制 가 성립한 터여서, 연군에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노동력이 존재하였고, 농민을 대상으로 무리한 差役이 감행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 시기는 요역제 운영에 의해 공해수리처럼 부득이 役民하더라도 반드시 순영에 승인을 얻어 차역하고, 力役을 징발하더라도 종래와 달리 완전한 무상의 강제노동은 아니었다. 징발된 연군들에게 役糧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治道의 역사에 동원된 沿路의 田夫들에게 미곡을 지급하는 일등이 이 같은 경우에 속한다¹⁴³⁾.

그러나, 초량객사의 수리는 19세기의 役事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의 강제노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1825년 초량객사 외삼문 개건에 소용될 재목을 착별할 때, 水陸曳運의 노역에 募軍을 이용할 것인지, 役民에서 차역할 것인지의 문제를 신축년 개건 등록의 전례 및 여타 公廡 수개와 비교하여 회통하라는 水營吏의 追通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신축년 개건등록을 근거로 하여 장수, 봉족은 각 진포의 방군으로써 輪回 使役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¹⁴⁴⁾. 地瓦燔造할 때도 軍丁은 大同煙役이 일어난 때이므로, 연로하여 보호자가 (率丁)가 없는 자나, 병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함께 부역시키고 역에 빠져 죄에 저촉되는 자가 없도록 할 것을 釜山西面에게 당부하고 있다¹⁴⁵⁾. 재목을 수취할 경우에는 봉산지방판이, 물력 조급의 책무를 맡은 해당里任이나 洞任을 거느리고 사역하였다.

1873년 객사 중수시에는 사하면의 연정(매일 100명)이 부역하면서도 10집마다 도끼 1자루와 5집마다 줄 1묶음을 役所에 지참하여 들어가야 했는데, 이 역시 무상징발이며, 강제동원에 해당하는 조목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19세기에도 여전히 民丁은 중앙권력에 의한 지배와 수취의 대상이 되는 존재임을 말해준다. 특히, 동래부 공사는 특수한 지역적 조건¹⁴⁶⁾ 때문에 역역징발의 관행이 잔존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조선후기의 만성적인 재정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영공사의 사례가 모두 그러하듯이¹⁴⁷⁾ 공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의 한 방편으로써 민정의 무상노동을 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4. 物力 및 役價의 支給

草梁公廡는 草梁倭館 일대에 함께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草梁公廡의 수리는 곧 왜관공사의 일부로 취급되어졌다. 물론 왜관의 경우는 監董譯官이 수리비용을 조달 하였고, 宴大廳이나

143) 尹用出, 「18세기초 東萊府의 築城役과 賦役勞動」, 「韓國文化研究」2,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9, pp.21~22

144) 水營吏私通 「草梁客舍 外三門 改建臘錄」乙酉11월 14일

145) 「草梁客舍 外三門 改建臘錄」,丙戌 3월 1일

146) 동래부사 吳翰源은 당시 府民들이 수영소속이자 본부소속이며, 다시 각진 소속이 되어, 東西應役하는 형편이라하였다. 「鄉廳考往錄」, 「備邊司臘錄」 198冊 純祖7年 正月 20日, 尹用出의 前揭論考에서 재인용

147) 모군에 대한 인신적 구속력이 적은 상황에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여의치 않아 창덕궁 수리에서는 오부방민을 부역동원하였다. 이권영, 「조선후기 관영건축공사의 재원과 비용절감 방안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1권 3호, 통권31호, 2002년 9월,

草梁客舍과 같은 草梁公廡수리에는 주로 東萊府使나 出使譯官¹⁴⁸⁾등이 이러한 역할을 이행하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왜관수리를 맡은 監董譯官이 草梁公廡의 정비도 함께 하는 등¹⁴⁹⁾, 초량공해는 왜관과 동일지역에 있고, 또 왜관을 지원하는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 草梁倭館의 수리에서 보여지는 것과 비슷하다. 1737년 공사를 마친 草梁客舍의 修改에는 도합 962냥 4전 1푼이 소요되었으며, 이 수개공사에 마련된 돈은 南倉錢 1,000냥을 이자 없이 빌려서 立本取贏한 것이었다고 하는데¹⁵⁰⁾, 이러한 방식은 초량왜관 수리공사의 재원확보책으로 경상도 각 고을의 저치미를 공작미로 相換하여 밀천을 남겨, 役價를 지급한다거나¹⁵¹⁾, 왜관수리 담당관인 감동역관이 고리대(殖利)를 통해 경비를 마련하는 것¹⁵²⁾과 매우 유사한 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초량공해의 수리는 비교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리요청이 생기면 자연 없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물력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草梁公廡修理의 所入木材는 草梁에서 가까운 絶影島의 목재를 취용하는 것이 상레이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慶尙道 封山에서 가져오기도 하였으며¹⁵³⁾, 1734년 초량객사의 수리에는 부근封山의 風落木을 착별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¹⁵⁴⁾. 이처럼 초량공해의 수리를 담당한 관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공사를 잘 진행하여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공사를 담당한 관리 자신의 自費를 들여 수리를 마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 김건서는 1787년 8월의 宴享廳 수리비용을 私錢 1400여 냥을 변통하여 역가지급 문제를 해결하였고¹⁵⁵⁾, 1791년에는 6처 伏兵 27칸의 수보를 金徽重과 함께 私錢 700여 냥을 들여 시행하기도 하였다¹⁵⁶⁾. 이와 같은 출사역관 金健瑞의 활약은 왜관일대의 책임을 맡은 관리가 특별히 조선공해에 더욱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공사책임관의 노력으로 확보된 공사비는 <Table.5>과 <Table.6>¹⁵⁷⁾에 기재한 바와 같이 역가를 지불하거나 소요 물력을 사

148) 1734년 草梁客舍修補 때는 府使 崔命相이, 1737년 宴享大廳修補 때는 府使 吳命瑞이, 1787년 宴享廳수리는 出使譯官 金健瑞가 담당하였다. 「邊例集要」 卷11 館宇

149) 1791년 倭館開市大廳 監董譯官이었던 金健瑞와 金徽重은 개시대청개건을 마침과 동시에 邊上의 公廡(六處 伏兵 27칸)를修補하여 이를 상부에서 論賞하기도 하였다. 「邊例集要」 卷11 館宇 辛亥12月

150) 卷11 館宇 甲寅 8月

151) 이 기록은 壬寅年 3月 초 9일 동래부사 윤석래의 장계에 대한 비변사의 회계에 잘 기록되어 있다.本道附近各邑儲置米九千石出給於監董譯官俾與公作米相換存本取贏用於修理待秋以本色米依數納之意啟啓傳曰知道.....「倭館移建勝錄」壬寅 3月 9日, 이는 정해진 규정을 따른 것으로 그 규정에 관한 것은 「春官志」 卷3 館修理條에 잘 기록되어 있다.

152) 倭學譯官은 관청고리대를 통해서 이미 고리대 운영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들은 주로 조선이 부담해야 하는 왜관의 개축 및 증축비용, 移館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리대를 하고 있었다. 양홍숙, 17~18세기 「倭學譯官의 對日貿易」,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50. 1797년에 공사를 마친 西館 東大廳 東行廊의 重修에는 南倉, 濟民倉의 9,000냥을 빌렸다. 「邊例集要」 卷11 館宇 戊申7月27日, 「通文館志」에 기재된 사실을 토대로 하면 이러한 고리대는 왜관장건 때에도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通文館志」 제 7 人物

153) 「邊例集要」 卷11 館宇 丁巳 閏9月

154) 「邊例集要」 卷11 館宇 甲寅8月

155) 「邊例集要」 卷11 館宇 8月

156) 金健瑞 金徽重等手本內.....六處伏兵二十七間 添材瓦修補 伏兵軍器 一新改備 所入私錢 七百餘兩是白乎所.....「邊例集要」 卷11 館宇 辛亥 12月

Table. 5 1737년 草梁客舍修改의 役價와 物力價

(출전:邊例集要, 卷11 館宇條, 甲寅 8월)

물력재와/ 인력	급가 및 물력의 양
正廳, 東西軒, 中門, 大門, 體木, 修粧木	269株 (합51칸)
木手30명, 治匠1명, 監董監官2인, 色吏1인, 庫子2명, 火丁 4명, 蓋瓦仰土 5명, 畵員 25명	限一朔料米/甘醬/饌價, 酒, 米, 曲子, 布 지급
彩色	(사료에 기록되지 않음)
地瓦	5 訥
正鐵	400근
炭	40섬
石灰	20섬
塗褙紙	(사료에 기록되지 않음)
龍亭子	(사료에 기록되지 않음)
都合	962냥 4전 1푼
儀仗所入各色紬緞	111냥 9전

는데 사용되었는데, 공사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역시 工匠의 役價지불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737년 초량객사 수개의 경우에는 木手 30명, 治匠1명, 監董監官2인, 色吏1인, 庫子2명, 火丁 4명, 蓋瓦仰土 5명, 畵員 25명에게 限一朔料米, 甘醬, 饌價를 지급하였는데, 정확한 지출비용은 알 수 없지만, 이들 匠人們에게, 酒(酒)과 쌀(米), 누룩(曲子), 베(布)를 더 지급한 내역과 함께 나머지 물력 등을 합하여 모두 962냥 4전 1푼이 지출되었다¹⁵⁸⁾.

그런데 이러한 지급방식은 비슷한 시기, 같은 사료에 기재된 왜관 동대청, 동행랑 수리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1733년에 시작하여 1740년 수리를 마친 서관 동대청 동행랑 수리에는 倭木手, 役夫倭들과 함께 같은 役所에 투입된 朝鮮木手, 朝鮮役軍들에게는 每日 每名 3錢 씩의 工錢이 지급되었다¹⁵⁹⁾. 즉, 같은 시기, 이웃하는 곳에서 행해진 役事였으나, 왜관의 경우는 공전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초량객사에서는 米와 布로써 役價를 지급했던 것이다. 이는 왜관이 특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이유는 17~18세기 관영영선을 기록한 의궤서 가운데 「景慕宮宮改建都監儀軌」에서만 이례적으로 목수의 역가지급에 화폐가 도입된 사설을 기록¹⁶⁰⁾하고 있으며, 이 기록은 西館 東大廳 東行廊 修理보다 36년 뒤인 1776년의 것이므로 西館 東大廳 東行廊 修理때와 같은 경제상황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왜관과 초량객사로 대표되는 초량공해와의 역가지급방식은 상이하였지만, 1873년의 草梁客舍 重修에는 木手, 石手, 引鋸匠, 隨從軍

157) <표4>1873년 草梁客舍重修의 役價 및 物力價는 殿牌의 移安 및 奉安에 따르는 물력과 역가(가마군의 역가나 가마비 등)는 제외하고, 건물의 수개에 들어간 역가와 물력가를 정리한 것이다. 이 때 이안, 봉안에 따르는 물력가를 합하여 총 6272냥 9전 7푼이었다 한다.

158) 「邊例集要」 卷11 館宇 甲寅 8月

159) 「邊例集要」 卷11 館宇 庚寅 8月

160) 金東旭, 「韓國建築工匠史研究」, 技文堂, 1993

들에게 都合 錢2401냥 5전 4푼 상당의 工錢을 지급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이후 초량공해의 수리에도 공전을 지급하는 방식

Table. 6 1873년 草梁客舍重修의 役價와 物力價

(출전: 草梁客舍重修賸錄)

물력재와/ 인력	급가 및 물력의 양
木手, 石手, 泥匠, 治匠, 引 鋸匠, 隨從軍等 工價/役所 各各小小雜下	錢 2401냥 5전 4푼 (7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正鐵	錢 282냥 8푼
丹腹	錢 393냥 4전 9푼
絕影道伐木	錢 103냥 1전 8푼
丹腹工價	錢 193냥 4전 9푼
白木	錢 12냥
各樣彩器	錢 9냥 8전 5푼
灰 175섬	錢 180냥 2전 5푼(매 섬 1 냥 3푼씩)
篩子 3箇	錢 1냥 5전
地瓦 4313장, 壁瓦566장	錢 151냥 4전 6푼
大金 175장, 小金 170장(殿 牌改金)	錢 23냥 3푼
들기름(法油) 6발, 柱木塗 油	錢 12냥 4전 5푼
工監開雲萬戶, 都監官 各1 員, 藍色 8인, 하인 2명 (7월 초 3일부터 8월 18일까 지)	錢 147냥 2전 8푼
蓋瓦匠 工價	錢 45냥
야간공사에 쓸 燭 170자루	錢 1냥 8전
絕影道曳木時 烟丁 粮料 (米 31石 4斗 4刀 5合)	錢 460냥 8전 6푼
懸板3立	錢 25냥 4전 5푼
簾竹34箇, 支柱	錢 1냥 8전
匠色들의 糜饋	錢 69냥 1전 1푼

이 도입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좀 더 명확히 규명하려면 우선, 언제부터 역가가 화폐로 지급되었는가에 대한 문제부터 밝혀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차후에 진행되어져야 할 문제이다.

草梁客舍의 수개에 소용되는 물력의 조목은 <Table.5>과, <Table.6>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體木, 修粧木 및 檻木등에 쓰일 材木, 丹腹에 쓰일 彩色, 修葺에 쓰일 地瓦, 正鐵, 石灰, 炭, 塗梢紙, 殿牌의 移安, 奉安에 쓰일 龍亭子, 儀仗에 소용될 각色紬綵 등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목재는 주로 草梁과 가까운 絶影島에서 伐木하는 것이 전례로 되어 있었다. 1738년 공사를 마친 宴享大廳의 修補에서는 재목을 絶影島에서 취용할 수 없어 右道봉산에서 취용할 내용을 府使 吳命瑞가 상부에 보고하기도 하였고, 이후 1825년 草梁客舍外三門 改建時에도 體木은 封山에서 작벌¹⁶¹⁾하였고, 修粧椽木과 假家扶械木은 절영도에

서 取用하는 辛丑年の 전례를 언급¹⁶²⁾하였다. 또한, 1873년 시행된 草梁客舍重修에는 假家木, 扶械木, 檻子木을 絶影島에서 취용하였다¹⁶³⁾. 이처럼 절영도에서 재목을 수취할 수 없을 때는 慶尚道封山에서 취용하였는데, 때때로 한 곳에서 수취할 수 없어, 여러 곳에서 分配하여 斥給하자는 계책¹⁶⁴⁾이 나올 정도로材木을 얻는 일은 쉽지 않았다. 게다가 봉산에서 작벌할 때는 水營 및 巡營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취득한 목재는 절약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825년 초량객사외삼문 개건시에나 1873년 초량객사 중수시에도 소용되었던 燐瓦吐木은 절영도 伐木중에 頭斷木으로써 취용하기도 하였다¹⁶⁵⁾. 또한 재목이 長大하여 옮기는 데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야 하는 폐단이 있어, 材木의 中斷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특별히 監斫차사원으로 하여금 都木手를 委送 하였는데¹⁶⁶⁾, 이는 元材 가공의 良否에 따라 館宇의 제작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방식을 취해야만 재목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재료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封山에서 취용한 목재를 옮길 때에는 兵營의 伺候船이 동원되는 것도 최대한 物力價를 절약하기 위한 계책이었다고 생각된다.

목재이외에도 각색물력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각처에서 조달되었는데, 1873년 草梁客舍重修賸錄의 後錄에는 물력의 출처 및 취용방법이 잘 나타나 있다. 이 후록에서 材木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력은 모두 각 소입물력의 생산처에서 썼던 사실을 알 수 있다.¹⁶⁷⁾ 그러나 급시에 조급해야 할 경우는 釜山鎮의 營繕庫를 활용하기도 하기도 하였는데, 1873년 草梁客舍의 重修에는 대장간에서 사서 쓰는 숫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우선 부산진 영선고에 있는 숫(炭) 몇 섬을 빌려 쓰고 숫이 도착하면 갚아주기로 하였다¹⁶⁸⁾.

役所에 들일 기본적인 작업도구들은 해당면·동의 民에게 적절히 분정하여 거두어 들였다. 초량객사수개에 每戶마다 薦索, 肇(注乙)3把, 空石1立을 分定收合하게 하였으며¹⁶⁹⁾, 부산면

162) 이 때는 절영도가 모두 童灌하여 사하금치, 양산내포봉산에서 재목을 취용하였다. 「草梁客舍外三門改建賸錄」, 各司賸錄13, 國史編纂委員會, 1982

163) 「草梁客舍重修賸錄」, 各司賸錄13, 國史編纂委員會, 1982

164) 體木 20株, 修粧木 50柱, 檻木 60株, 扶械木 30株를 분배 각급할 뜻을 동래부사가 감영에 보고하였는데, 그 결과 沙下 金峙, 梁山 內浦封山에서 재목을 취용할 수 있게 된다. 「草梁客舍外三門改建賸錄」, 各司賸錄13, 國史編纂委員會, 1982

165) 燐瓦吐木段以體材末端限十法取用為有如乎... 「草梁客舍外三門改建賸錄」, 各司賸錄13, 國史編纂委員會, 1982

癸酉七瓦月監十官四處日傳燔令瓦, 監官處 傳令-. 燐瓦吐木以絕影道伐木中 頭斷木 取用之意... 「草梁客舍重修賸錄」, 各司賸錄13, 國史編纂委員會, 1982

166) 양산내포의 재목은 大松이 길이 9把에, 둘레 3抱로 매 그루마다 500명이, 中松은 매 그루마다 100명이 분파해야 하였는데 이 수량이 모두 70그루가 되었기에, 梁山民의 정세를 생각하여 裁斷하여 운반의 폐단을 멀기로 결정한다. 「草梁客舍外三門改建賸錄」, 各司賸錄13, 國史編纂委員會, 1982

167) 假家木 扶械木는 絶影道에서 取用하고, 각 장수가 접할 바 되는 假家는 役所에서 조급하고, 檻子木는 절영도에서 취용하고, 丹腹에 취용할 木桶 및 沙器등의 물건은 級價취용하고, 役所에 飲食食鼎(솥)은 초량동 등에서 갖추었다.

168) 治所用賈炭姑未來到爲役萬分時急貴鎮營繕庫所在炭中限幾石待役所往復以爲貸給則待賈炭來倒則爲還完之意... 「草梁客舍重修賸錄」, 各司賸錄13, 國史編纂委員會, 1982

169) 癸酉七月 初四日, 各面了留鄉所下帖, 「草梁客舍重修賸錄」, 各司賸錄13, 國史編纂委員會, 1982

161) 「邊例集要」 권11 館宇 丁巳 閏9月

의 烟丁은 절용도 목재를 자벌하기 위한 부역을 이행하면서도 매 열 집마다 도끼(斧子)한 자루(柄), 매 다섯 집마다 줄 한 묶음(長)씩을 가지고 役所에 들어가야만 하였다.¹⁷⁰⁾

또한, 役所에 쓰일 築竹은 기한을 정하여 北面에서 160개, 東面에서 170개, 西面에서 170개씩 각 동에 分定하여 확보하기도 하였다¹⁷¹⁾. 이처럼, 농민들이 쓰던 농기구, 즉 箕· 가래· 팽이 등은 그대로 토목공사의 작업도구로 전용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또한 징발역군의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軍役을 지던 양인 농민들이 무기를 지참한 채 복역했던 사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비를 스스로 장만하는 일 또한 부역노동에 따르는 추가부담이었던 셈이다¹⁷²⁾. 民을 무상징발 하였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실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공사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사담당관의 입장에서는 목재를 절약하고, 공사도구를 民으로부터 회수하는 일은 어렵게 확보한 공사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나름의 대처방안 이었던 것이다.

5. 結論

초량왜관의 조영역사를 고찰하고, 건축내용의 변화상을 규명하여 이를 통해 공사관리국인 조선의 조영의지를 살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75년 8월에 착공되어 1678년 4월에 낙성되기까지 약 3년에 걸쳐 진행된 왜관창건공사에 조영된 건물에는 東館 三大廳과 西館 三大廳, 그리고 倭側私造家舍가 있으며, 왜관의 外牆밖에 설치된 朝鮮公廝로 公須間을 포함한 宴享廳이 있었다. 또한 關防으로는 守門과 北門이 있으며, 伏兵幕 3處가 있었다. 조선은 왜관의 주요건물인 東館과 西館, 關防인 守門과 北門, 伏兵幕, 그리고 왜관부속 건물인 宴享廳을 조영하였다. 일본은 倭側私造家舍인 封進庫, 什物庫, 東向寺와 代官家, 鷦鷯房 등을 지었으며, 外牆을 축성하였고, 西館의 中大廳 가운데 일부를 덧 짓기도 한 것이 밝혀졌다.

왜관수리는 1684년부터 1864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21건이 시행되었으며, 그 가운데 大監董은 5회, 小監董은 16회에 달한다. 왜관수리공사에는 규모를 그대로 지키는 수리와 칸수를 늘려 짓는(增築) 증수가 있었는데 1724년을 기점으로 적지 않은 규모로 증축되기 시작한다. 대규모의 間架增築은 17~18세기에 활발한 朝日貿易活動이 전개되면서 발생되었으며, 이에 조정은 먼저 倭使들이 머무는 西館부터 증축하였다.

왜관은 창건과 수리를 거듭하며 증축되어 공사 내용이 증가하였으며, 각 건물마다 조영주체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조정은 館宇수리의 책임을 조정이 조영한 건물로 한정하였고, 왜인이 훼손한 곳은 수리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왜관공사에 소요된 역가와 물력의 지급내용을 살펴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170) 癸酉七月 初五日沙下面了 傳令, 「草梁客舍重修謄錄」, 各司謄錄13, 國史編纂委員會, 1982

171) 癸酉 七月 二十二日留鄉所下帖, 「草梁客舍重修謄錄」, 各司謄錄13, 國史編纂委員會, 1982

172) 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pp.112~113

왜관창건과 수리 때 소요되는 역가와 물력은 모두 조정에서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조정이 왜목수의 인원 수 조정이나 역가지급의 규칙 등을 결정하여 이행하였다. 창건 당시의 역가는 東萊府 稅銀과 倭館 被執物貨를 이용하였고, 料米는 賑恤廳이나 常平廳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수리 때에는 儲置米나 監董譯官의 私錢 또는 官貨를 殖利하여 조달하였다. 위의 사실은 당시 왜관공사가 東萊府와 조정에 많은 부담이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도 조정이 왜관을 조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왜관을 조선정부의 소유로 인식하고, 평화적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겼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또한 조정은 창건공사에 투입된 왜목수에게, 조선목수에게 지급되는 것 보다 더 많은 料米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1733년의 기록에 따르면 왜목수보다 조선목수에게 더 많은 工錢을 지급하고 있으며, 1831년 이후에는 조선목수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추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로써 교란관계의 정도에 따라 왜관공사의 중요도 인식도 다양하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감동역관의 집행활동과 공사인력의 조영활동을 통해 양국의 건축생산 활동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건당시 공사집행의 실질적 인물은 訓導와 別差였으며, 이들은 조정과 왜인의 사이에서 중요한 협안을 타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수리 때에는 監董譯官이라는 직제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왜관수리의 지급을 전담도록 하는 권한을 주었다. 이들은 修理處 摘奸, 공사비의 책정, 공사비 소요정도의 일차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임무수행 정도가 왜관조영에 미친 영향이 아주 컸음을 엿볼 수 있었다. 왜관의 東館과 西館은 모두 監董譯官의 집행 하에 조영되었으나, 실제 왜관의 공사인력은 工匠과 役夫였다. 왜관의 조영인력은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창건당시에는 왜목수 150명과 조선목수가 함께 조영활동을 펼쳤고, 수리초기에는 왜목수 중심의 조영활동이 전개되었다. 창건시기와 수리초기의 조선목수에게는 일본 양식이 생소하였다. 그러므로 왜관조영 초기에 조선은 왜목수에게 역가를 지불하고 물력을 준비하는 방식을 택하였던 것이다.

1723년 이후 수리공사에는 상당수의 조선인력이 동참하고 있었는데, 조선의 인력에는 역부뿐만 아니 라 匠人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왜관은 양국의 건축공사 관례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 다시 말해 초량왜관은 조일 양국 건축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되었으며, 이 大役事を 통하여 양국의 목수들은 각 국의 조영규범과 양식을 경험하고 배우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리라 사료된다.

왜관수리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가 지난 1796년, 화성성역이 진행될 때 일본의 건축도구인 倭鉗를 서울의 시장에서 구입했다는 기록은 이미 양국의 건축기술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초량왜관의 수리도 1831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선 목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교란체제의 변질로 인해 조정이 일본양식을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려했을 경우와 이미 창건과 수리를 거듭하면서 어느 정도 일본건축문화를

경험한 조선 목수만으로도 왜관수리가 가능해졌을 경우로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영인력구성의 추이를 통해 왜관 양식의 변화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초량왜관은 창건 때부터 일본양식으로 조영되었다. 開市大廳개건 때에도 倭工匠을 사역하였던 점이나, 多多味家등을 설치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수리기간 가운데에도 일본양식이 지켜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723년 이후 수리공사부터 상당 수 조선인력이 공사에 동참하였는데, 이 때부터 조선목수와 왜목수가 자연스럽게 서로의 조영기술을 소개하고 배울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831년 이후의 수리에는 본격적으로 조선공장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상반된 대외의식과 易地通信에 의해 교란체제가 변질되어 가던 무렵이었으므로 조선이 일본양식의 건물을 유지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왜인의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범위 내에서 일본양식이 지켜진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草梁倭館은 수리기간 동안 양국의 기술교류를 통해 양식의 변화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草梁客舍의 造營節次는 재목을 수취할 때와 일반물력을 수취할 때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材木을收取할 때는 주로 수영과 감영의 허가를 받아 작별하였으며, 일반 物力を 수취하는 경우는 東萊府 주관으로 상부의 허락을 받아 이루어졌다。材木收取의 경우 부산진에서 재목작별을 요청을 하면 작별허락은 감영에서 하였지만, 실질적인 작별과정에 대한 상의는 수영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반적인 物力收取의 경우는 동래부사의 주관으로 재지사족 중심의 자치적 행정계통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왜관공사와는 비준되는 사실로 草梁公廳의 수리가 자치적 행정계통에 의해 비교적 자발적으로 이행되었음을 말해준다.

草梁客舍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은 草梁倭館수리의 그것과 유사하나 역가지급방식은 서로 차이를 보이는데, 초량객사에서는 米 와 布로써, 왜관에서는 공가로써 지급하였다. 초량공해의 수리는 비교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리요청이 생기면 지역 없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물력을 갖추었다. 초량공해의 수리를 담당한 관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공사를 잘 진행하여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목재를 절약하고, 공사도구를 民으로부터 회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공사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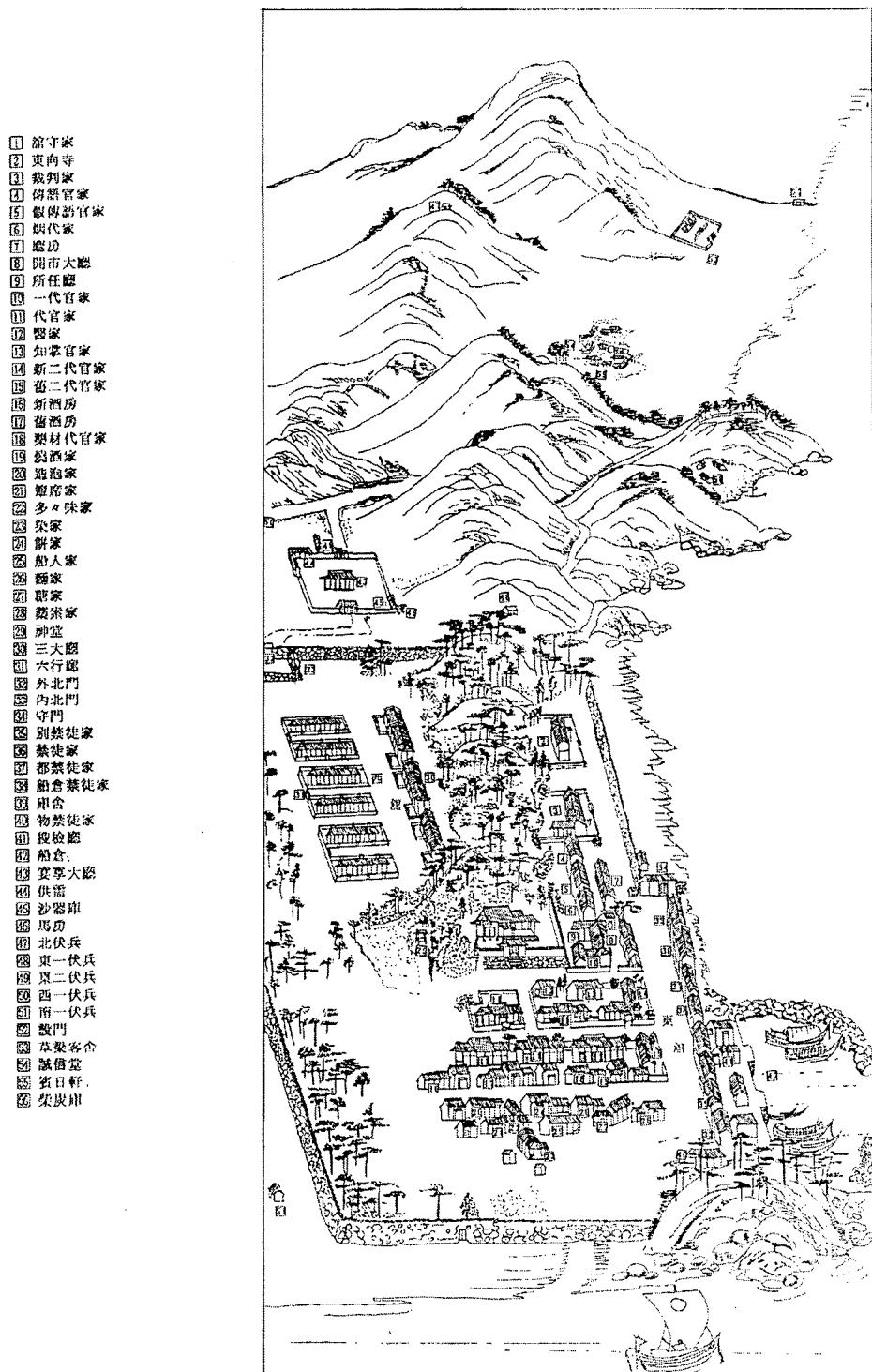
즉, 초량왜관은 조정 중심의 조영활동이, 초량공해는 위치 및 기능상 왜관공사와 함께 거론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지사족 중심의 조영활동이 이루어졌다.

- [2]. 『倭館修理贊錄』, 奎章閣 圖書 12923
- [3]. 『邊例集要』, 國史編纂委員會, 1970
- [4]. 金建瑞 著, 하우봉, 홍성덕 譯, 『增正交隣志』, 민족문화추진회, 1998
- [5]. 『通文館志』, 사단법 인세종대 왕기념사업회, 1998
- [6]. 『春官志』, 법제처, 1976
- [7]. 『釜山府史原稿』, 倭館篇, 民族文化, 1986
- [8]. 『太宗實錄』, 國史編纂委員會, 1955
- [9]. 『顯宗改修實錄』, 國史編纂委員會, 1955
- [10]. 『肅宗實錄』, 國史編纂委員會, 1955
- [11]. 『草梁客舍外三門改建贊錄』, 『草梁客舍重修贊錄』, 各司贊錄13, 國史編纂委員會, 1982
- [12]. 『備邊司贊錄』, 國史編纂委員會, 1990
- [13]. 양홍숙, 『17~18세기 倭學譯官의 對日貿易』,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14]. 孫承喆, 『朝鮮時代 韓日關係史 研究』, 지성의 샘
- [15]. 張舜順, 『朝鮮後期 草梁倭館의 修理實態』, 제46회 한일관계사학회 월례발표회 1998년6월 13일

참 고 문 헌

- [1]. 『倭館移建贊錄』, 奎章閣 圖書 12892

<Appendix. 1> 변박의 왜관도에 기록된 각 館宇의 명칭 (그림: 본고저자 정예정/ 탈초: 부산대 사학과 김동철 교수)



<Appendix. 2> 草梁倭館의 工事沿革

(이 표는 「邊例集要」, 권11 館宇條, 「倭館移建賸錄」, 「倭館修理賸錄」, 「增正交隣志」, 「釜山府史原稿」, 張舜順, 「조선후기 초량왜관의 수리실태」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增正交隣志」에는 서관 네행랑 수리이후 5차례의 중수 및 수리명칭을 기록하였으나 공사내용은 없다.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비	감동역관	건축내용	인력구성 및 기타 건축
초량왜관 창건	1675-1678	쌀 9,000석, 은 6,000냥	金謹行, 朴再興, 洪禹再, 朴有年	家舍 796칸 반 墻垣 1,630칸 5자	왜목수 150명(대목수 70명, 소목수 80명) 我國木手, 助役, 炊飯僧人의 합 2,213명
관수왜가 화재	1684-1690	3600냥	韓天錫	50칸 → 50칸	
동. 서 왜관수리	1700-1702	7000냥	朴再興	기록이 없음	修理次知倭 2명, 役夫倭 12명
서관 동대청 서행랑 화재	1715-1715	672냥	崔尚積, 金顯門	56칸 → 56칸 11자	倭館造成監董頭倭 2명 木手倭 12명, 引鋸倭 6명, 泥匠倭 1명, 役夫倭 10명 1708년 宴享大廳 重修 1709년 設門설치
서관 삼대청 오행랑중수	1723-1724	16010냥 7전 2푼	韓重億, 朴泰信, 卞箕和	594 → 941칸	我國各色工匠, 倭匠人 監董次知倭 2인, 役夫倭 2명, 木手倭 15명, 引鋸倭 6명, 泥匠倭 1명
동관 삼대청 중수	1727-1728	5887냥 5전	金壽九→崔岱齊	207칸	東館修理監董次知倭 2인, 役夫倭 2명, 木手倭 6명, 引鋸倭 2명, 泥匠倭 1명 1727년 成信堂, 任所 건설
서관 동대청 동행랑 화재	1740-1740	2974냥	朴春瑞 玄德淵	56칸 → 56칸 11자 5치	조선역군 5,730명 동원, 我國木手 매일 8명씩(204일) 동원 倭木手 12명, 引鋸倭 6명, 役夫倭 10명 1735년 草梁客舍修理 1738년 宴享大廳 重修 1739년 6복병 설치
동. 서관 삼대청 오행랑중수	1749-1751 동관 1749-1750 서관 1749-1751	34089냥 15전 12푼	동 관(朴尚淳, 前主薄, 崔鶴齡) 서 관(玄德淵, 慎榮來, 黃夏成, 玄尚老)	관수가(93칸) 재판가(51칸) 개시대청(60칸) 서관(941칸)	
서관 동대청 동행랑 수리	1667-1667	6370냥 5전		85칸	
동. 서관 삼대청 수리	1773-1775 동관 1774-1775 서관 1774-1775	53800냥	동관(玄啓根, 李命和) 서관(玄商禎, 卞光秀)	관수가(93칸) 재판가(51칸) 개시대청(60칸) 서관(941칸)	
서관 동대청 서행랑 화재	1786-1787	13500냥	李命和, 趙重明	85칸	
동관 개시대청화재	1791-1791	13500냥	金健瑞, 金微重	開市大廳 39칸 등(代 官倭 합 135칸) → 동대청 60칸,倭館守門 守直廳舍 20칸, 6처 伏 兵 27칸	
서관 동대청 동행랑 중수	1796-1797	9000냥	金微重, 朴致儉	85칸	
동. 서왜관 수리	1802-1804		동관(洪達洛, 丁樂升) 서관(崔國禎, 趙完澤, 玄商禎, 金在恭)		
동대청 서행랑 중수	1815-1815				
서관 중대청 화재	1826-1828		玄義洵	80칸	1825년 草梁客舍外三門 改建
서관 네행랑 수리	1831-1832				조선측 공장 사용